

월간

재정포럼

2019. January_Vol.271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1

권두칼럼

2019년의 경제와 조세·재정정책 | 김유찬

현안분석

경기 국면에 따른 가격경직성의 정도와 재정정책의 효과 | 강동익
일자리 재정정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언 | 장우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외



쓸수록 줄어듭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일회용 종이컵,
쓸수록 북극곰들의 집은 줄어듭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CONTENTS

권두칼럼

2019년의 경제와 조세·재정정책 | 김유찬 02

현안분석

경기 국면에 따른 가격경직성의 정도와 재정정책의 효과 08

| 강동익

일자리 재정정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언 | 장우현 2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60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외

정책흐름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76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78

2018년 11월까지 국세수입 279.9조원 82



2019년의 경제와 조세·재정정책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2019년이 시작되었지만, 경제전망은 회색빛이 짙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심각한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것 같으나 언제 재연(再燃)될지 모른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EU 일부 국가들의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과 저성장도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국제금융시장에 개방된 우리 경제에 이러한 국제경제의 환경은 위협적이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확산될 경우 자본의 이동에 부담이 없어서 자동인출기라고도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해외 단기자본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배와 성장의 동시 추구를 위한 경제정책

국내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실업은 심각하며, 무엇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목소리로 각자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생활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근로소득은 상당 폭 증가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로 성장에서 소외되는 근로자와 가계와 노인가계가 증가하고 있다. 중위 계층 근로소득자들의 생활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주거, 교육, 연금 문제가 대다수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조선, 해운, 철강 등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 등의 분야도 미래의 경쟁력에 대하여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 산업의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이전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남북관계도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또 부담인 측면이 있다.

한 국가가 실질성장률이 2% 후반, 명목성장률이 4~5%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나라가 개도국이 아니라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에서 중견국과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면 그러한 나라를 판단할 때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정상적인 수준의 성장률하에서 경제주체들이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면 이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가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보다 경제성장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현재 한국경제의 국면에서는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동시 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2018년 11월 말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했다. 찬성이 58.8%, 반대가 40.7%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놀랍게도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다만 동시에 현시점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72.1%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 5.6%보다 압도적이었다.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국민들의 시각이 대체로 현재 시점의 경제의 어려움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동시 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소비와 내수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창출

잘사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경제 비교를 통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할 때 흔히 잘사는 나라들의 기업과 그러한 기업의 상품을 우리나라의 기업, 그리고 상품과 비교한다. 그러나 잘사는 나라들의 시민생활과 우리나라의 시민생활을 비교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잘사는 나라의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안에 민간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양서비스 등과 우리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시민들이 누리는 다양하고 깊은 여가와 취미생활은 전문성을 심화시켜주고 이들 분야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서비스들은 공공과 민간에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생활 분야의 차이가 선진국과 우리 경제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큰 부분을 설명해줄 수

.....

**소비와 내수 강화라는
경로를 통하여 개별
주체들의 소득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있다고 본다. 소비생활의 폭이 넓고 깊어야 일부 첨단산업(주로 제조업)에서 이루어진 경제성고가 국가 전체로 순환되고 나누어지며 확대·재생산된다.

OECD는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직업, 커뮤니티,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11개 지표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삶의 질 차이가 사회 활력의 차이와 더불어 지속적 성장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여가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여가시간의 보장으로 삶을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경제적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경제성장정책이다. 소비와 내수 강화라는 경로를 통하여 개별 주체들의 소득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영역인 조세·재정정책

국내외에 여러 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세와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누진적 과세를 통한 2차 재분배정책으로서 조세·재정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영역이다. 조세·재정정책은 시장의 1차적 분배 과정에서도 예산 투입과 조세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도록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자동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 확산은 기존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단순 노동을 기술로 대체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새로운 소비 영역이 만들어져서 이를 위한 생산과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효율성을 위해 없어지는 일자리를 상쇄할 수 있다. 일자리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행위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 현재 이행되는 일자리를 위한 조세·재정 영역의 지원제도

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일자리지원 조세·재정정책은 새로운 생산 및 소비 영역의 형성 및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입되어 그 결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약 570만명이며,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1.3%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평균 부채규모는 상용근로자 가구의 1.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세액공제한도 인상 등 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대료 문제,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의 불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다. 필요한 입법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영역에서는 확장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세체계 내에서 세목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끈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운동은 유류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너무 높았던 기존의 조세체계에서 부유세의 폐지가 먼저 있었고 여기에 유류세 부담이 증가되면서 조세체계의 역진성이 강화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 맹렬한 분노를 야기한 것이다. 우리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1:1 황금 비율을 잘 지켜가면서 세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역진적인 간접세 부분의 과세 확대도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임대소득, 금융소득,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빠짐없는 종합과세가 선행되고 시민들이 한 단계 높은 복지 수준을 체험한 이후에 간접세 부분의 세부담 증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KIPF**

• • • • •
우리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1:1 황금 비율을 잘 지켜가면서 세입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역진적인 간접세 부분의 과세 확대도 포함되어야 하겠으나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경기 국면에 따른 가격경직성의 정도와 재정정책의 효과

강동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자리 재정정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언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경기 국면에 따른 가격경직성의 정도와 재정정책의 효과

I. 서론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극심한 불황상황에서는 제로금리제약(Zero Lower Bound)으로 인하여 통화정책이 제한되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중요해짐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의 상태의존성(state-depende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이란 재정정책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경기 전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가 호황보다 불황에 더 강력하게 혹은 더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에 관한 인식은 케인즈로부터 비롯된다. 케인즈와 그의 추종자들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실업률이 높고 경제에 많은 여유(slack)가 있을 때만 비로소 크게 발현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졌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여주고자 했던 최초의 필립스 곡선(Phillips, 1958) 역시 상태의존성을 전제로 추정되었다([그림 1] 참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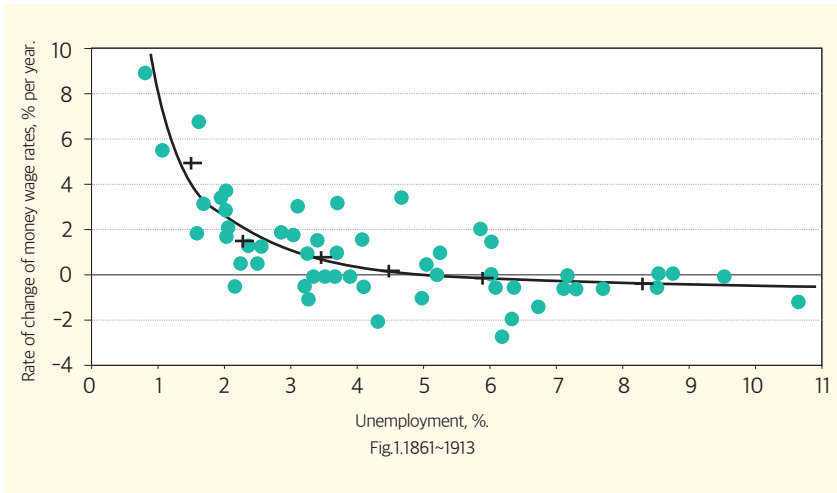
경기안정화정책에 관한 경제학 초기의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교양서와 정책 입안자의 생각에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태의존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의 현대 거시경제학에서는 상태의존성과 관련된 논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학의 방법론이 선형관계를 상정한 방법론 위주로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일명 DSGE로 일컬어지는 현대 거시경제학 모형들과 VAR 중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dikang@kipf.re.kr)

1) [그림 1]의 필립스 곡선을 추정할 때 불록함수의 형태를 강제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필립스 곡선이 불록함수의 형태를 띠는 것은, 곧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업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통화정책을 사용하였을 때 실업률이 낮아 기울기가 가파른 구간에서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대부분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실업률이 높아 기울기가 완만한 구간에서는 실업률과 총생산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림 1] 최초의 필립스 곡선



출처: Phillips(1958), Figure 1

심의 계량적 모형 모두 대부분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태의존성과 같은 비선형적 관계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그 연구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부족이다. 각 시기별로 하나의 관측치만 기록되는 거시 변수들의 경우,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형적인 관계만 추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비선형적인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 비선형적인 관계의 크기가 매우 작아 연구자들이 그동안 상태의존성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상태의존성과 같은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런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의 상태의존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역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a)와 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b)는 각각 미국과 OECD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재정정책 효과의 상태의존성을 측정하였다. 비선형의 경기반응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한 이 연구들은 미국과 OECD 주요 국가 모두에서 재정정책 효과의 상태의존성을 보였다. 경기 호황기보다는 불황기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이란 재정정책이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경기 전반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재정정책의 효과가 호황보다 불황에 더 강력하게 혹은 더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다.

미국과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재정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경기 호황기보다는 불황기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더욱 강력하다는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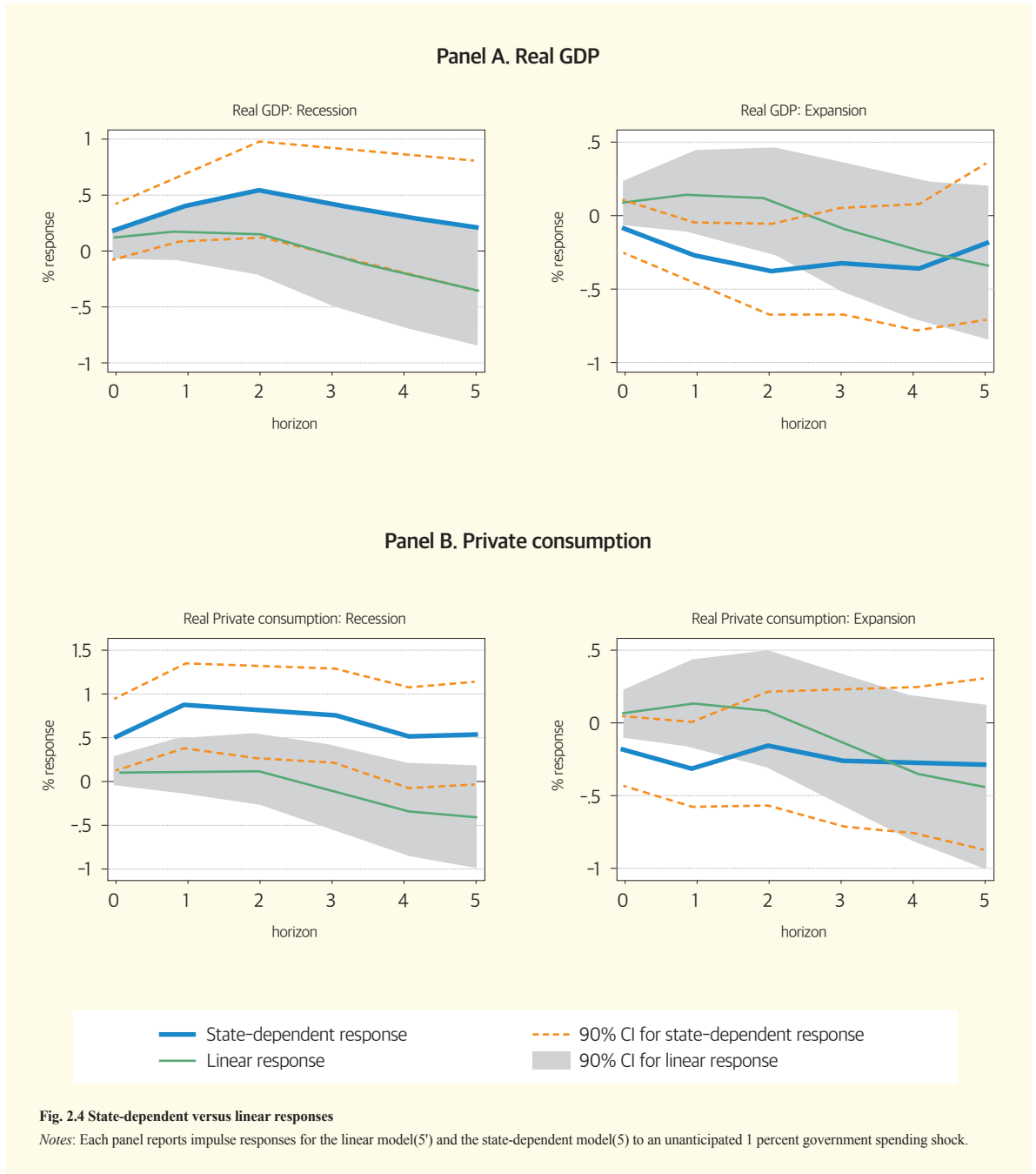
[그림 2]는 상태의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b)에 포함된 OECD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을 추정한 것이다. Panel A와 Panel B는 각각 재정지출을 1% 증가시켰을 경우 총생산과 민간소비의 변화를 나타낸 임펄스 응답함수이다. 이 결과 재정충격에 대한 반응이 총생산과 민간소비 모두 호황기보다는 불황기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uerbach and Gorodnichenko의 추정 결과 OECD 주요국들의 불황기에서의 최대 재정승수는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재정재출이 100원 증가할 경우 총생산은 350원가량 증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호황기의 재정승수는 미약하게나마 음수로 나타났다. 호황기에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총생산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가 불황기에는 총생산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호황기에는 오히려 경기를 침체시키는,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한국의 사정 역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손민규·이정욱(2014)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재정정책 효과 역시 상태의존성을 보인다. 추정방법론에 따라 불황기에서의 1년차 재정승수는 0.78~3.55 사이의 값을 갖는 반면, 호황기의 재정승수는 -0.10~0.63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 역시 호황기보다는 불황기의 재정정책 효과가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추정치의 범위가 매우 크게 나타나 정확한 재정승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상태의존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반면, 상태의존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b) 역시 이러한 실증적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 아직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과 관련된 연구는 초기단계로 상태의존성의 여부, 크기, 방향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 논문에서 보여준 증거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부 후속 연구(Fazzari et al. 2015)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OECD 주요국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



출처: Auerbach and Gorodnichenko(2012b), Figure 2.4 Panels A and B

가격경직성은 재정정책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경기안정화정책 전반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가격경직성의 경기역행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격경직성이 재정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인 후, 가격경직성의 경기역행성을 보인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II. 가격경직성과 재정정책

가격경직성은 재정정책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경기안정화정책 전반의 효과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곧 가격경직성의 변화가 재정정책 효과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가격경직성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총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Woodford(2011)가 제시한 분석 틀을 차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Woodford는 먼저 간단한 신고전학과 모형을 통해 재정정책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준 후, 가격경직성이 추가된 뉴케인지언 모형에서의 재정정책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재정정책에서 가격경직성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본고에서는 Woodford의 틀을 차용하여 논의 편의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1. 신고전학과 모형과 재정정책

Woodford는 다음과 같이 소비(C_t)와 노동(N_t)을 효용극대화하는 대표가구가 존재하는 경제를 산정했다. 대표가구의 효용은 식 (1)과 같은 함수로 정해진다.

$$\max \sum_t \beta^t [u(C_t) - v(N_t)] \quad \text{식 (1)}$$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소비 효용함수는 오목함수, 노동의 비효용함수는 볼록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u' > 0, u'' < 0, v' > 0, v'' > 0$). 한편, 이 경제의 대

표기업의 생산함수는 식 (2)와 같다.³⁾

$$Y_t = f(N_t) \quad \text{식 (2)}$$

이 생산함수는 오목함수이다 ($f' > 0, f'' < 0$). 또한 이 경제의 생산물은 대표가 구 혹은 정부(G)에 의하여 소비되기 때문에 균형에서의 수요는 식 (3)과 같이 생산과 균형을 이룬다.⁴⁾

$$Y_t = C_t + G_t \quad \text{식 (3)}$$

이 간단한 모형을 풀었을 경우 나타나는 균형조건 중 하나는 대표가구의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식 (4)와 같은 조건이다.

$$\frac{v'(N_t)}{u'(C_t)} = \frac{W_t}{P_t} \quad \text{식 (4)}$$

즉, 대표가구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실질임금이 노동의 한계비효용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노동공급이 결정된다.

한편 대표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실질임금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게 된다.

$$f'(N_t) = \frac{W_t}{P_t} \quad \text{식 (5)}$$

따라서 노동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공급과 수요가 일치되는 지점인, 식 (6)이 성립하는 지점에서 노동량이 결정된다.

$$\frac{v'(N_t)}{u'(C_t)} = f'(N_t) \quad \text{식 (6)}$$

한편 노동시장 균형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식 (6)에 생산물 시장의 균형조건인 식 (3)을 대입한 후 함수 \tilde{v} 를, 식 $\tilde{v}(Y) = v(f^{-1}(Y))$ 이 성립되도록 정의하면 식 (7)과 같은 표현을 구할 수 있다.

**가격경직성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총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 생산함수에는 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기변동 수준의 단기적인 효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과 같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작은 요소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생략해도 무방하다.

4) 자본이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총수요에 역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산요소 추가 투입의 한계비용이 높을수록 재정승수는 작아지게 된다.

$$u'(Y_t - G_t) = \tilde{v}'(Y_t) \tag{7}$$

생산물 시장과 노동시장만 존재하는 모형에서 두 시장의 균형조건을 결합한 식 (7)은, 이 경제 전체의 균형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식 (7)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변화가 총생산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식 (7)의 전미분을 통하여 재정정책의 변화가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rac{dY}{dG} = \frac{\eta_u}{\eta_u + \eta_v} < 1 \tag{8}$$

변수 η_u 는 효용함수 u 의 총생산에 대한 탄력성으로, $\eta_u = -\frac{Y u'}{u}$ 로 표현될 수 있으며, η_v 는 노동의 비효용과 생산함수가 결합된 함수 \tilde{v} 의 총생산 탄력성으로 $\eta_v = \frac{Y \tilde{v}'}{\tilde{v}}$ 로 표현된다.

식 (8)에서 볼 수 있듯이 탄력성 η_u 가 작을수록, 또 η_v 가 클수록 재정승수는 작아지게 된다. 이는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탄력성이 높을수록, 생산요소 추가 투입의 한계비용이 높을수록 재정승수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소비가 큰 폭으로 변하더라도 한계효용의 변화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대표가구는 노동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그 이유는 노동공급을 늘릴 경우 그들의 한계비효용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줄이더라도 한계효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지출이 민간소비에 대한 구축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생산요소 추가 투입의 한계비용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노동공급의 한계비효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또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생산요소가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비효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탄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민간소비가 줄어드는 구축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생산요소의 양이 클 경우 역시 대표가구 한계비효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가구는

소비를 줄여서 노동공급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식 (8)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가격경직성이 포함되지 않는 완전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정부지출이 민간소비까지 증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고전학파의 틀 속에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는 필연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 가격경직성과 재정정책

한편 가격경직성이 존재하는 뉴케인지언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이 모형의 기본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점적 경쟁시장하에서의 노동공급과 수요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점적 시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고 각 기업의 상품에 대한 고유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에 가격 결정권이 생긴다. 각 기업은 주어진 상품의 수요곡선하에서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독점적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모형들은 결국은 수요결정 모형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결정식이 곧 노동수요 조건이 된다.

개별기업의 가격은 식 (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_t = \mu \frac{W_t}{f'(n_t)} \quad \text{식 (9)}$$

변수 p_t 는 개별기업의 가격이고, n_t 는 개별기업의 노동수요이며, μ 는 기업의 한계수익률(markup)을 나타낸다. 흔히 가정하듯 각 기업의 수요곡선이 등탄력성(iso-elastic)을 지니고 있다면 수익률 μ 는 수요곡선의 탄력성에만 의존하는 상수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식 (9) 우변의 항 $\frac{W_t}{f'(n_t)}$ 는 기업의 한계비용이며 따라서 기업의 최적 가격은 한계비용에 일정한 한계수익률을 곱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기업의 생산함수가 같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제에서의 노동수요 조건은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가격경직성이 포함되지 않는 완전경쟁시장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1을 초과할 수 없다. 반면, 가격경직성이 존재하는 뉴케인지언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제의 가격이 경직적이라면 기업의 수익률 역시 경기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f'(N_t) = \mu_t \frac{W_t}{P_t} \tag{10}$$

변수 N_t 는 경제 전체의 노동량이며 P_t 는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그리고 μ_t 는 평균 한계수익률을 나타낸다. 식 (10)은 이 경제의 가격이 유연하고 모든 기업들의 수요함수 탄력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위 개별기업의 가격결정식과 동일한 식이다.

한편, 이 경제의 가격이 경직적이라면 기업의 수익률 역시 경기상황 등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대표가구의 노동공급 결정 조건은 신고전학파의 결정조건인 식 (4)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선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식 (10)에 식 (4)를 대입한 이후 $\tilde{v}(Y) = v(f^{-1}(Y))$ 이 만족되도록 함수를 정의하면 식 (11)과 같이 구할 수 있다.

$$u'(Y_t - G_t) = \mu_t \tilde{v}'(Y_t) \tag{11}$$

그리고 이 경우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는 식 (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rac{dY}{dG} = \frac{\eta_u}{\eta_u + \eta_v + \eta_\mu} \tag{12}$$

변수 $\eta_\mu = \frac{d\mu/dY}{\mu/Y}$ 는 기업의 한계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을 나타낸다.

가격이 경직적일 경우 기업의 한계수익률은 경기 역행적이다. 즉 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eta_\mu < 0$).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기업들은 늘어난 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로 인하여 총생산이 늘어날수록 생산요소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기업의 한계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상품의 가격은 경직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업의 평균적인 한계수익률은 한계비용에 역행하여,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게 된다.

가격경직성이 존재할 경우 재정승수는 신고전학파 모형에서의 재정승수보다 크다. 특히 한계수익률 총생산 탄력성의 절댓값이 생산요소 탄력성보다 클 경우에는 재정승수가 1보다 클 수 있다. 실제로 가격경직성을 포함한 거시모형에서의

재정승수는 1이 약간 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⁵⁾ 또한 가격의 경직성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승수효과는 높게 나타난다.⁶⁾

III. 가격경직성과 경기변동

앞의 내용은 현재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모형(신고전학과 모형과 뉴케인지언 모형)을 간단히 분석한 것으로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한편 Kang and Usher(2018)의 연구에 의하면 가격경직성은 경기 역행적이다. 즉, 가격은 불황일수록 더 경직적이다. 이러한 경기 변화에 따른 가격경직성의 변화는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격경직성과 경기변동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Kang and Usher(2018)의 연구에 의하면 가격은 경기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경직적이다. 이 연구는 상품의 매출액의 규모가 판매자의 가격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인다. 이 사실을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의 움직임과 함께 고려할 경우, 이는 곧 가격이 불황에 더 경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가격경직성의 경기역행성은 곧 불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본고의 관심사는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에 있다. 따라서 우선 이 연구를 살펴본 이후,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성과 관련된 이 연구의 결과들을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제II장의 분석과 연계지어 살펴볼 것이다.

1. 매출액과 가격결정 과정

Kang and Usher(2018)는 The Nielsen Company의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과 판매량 등이 기록되어 있는 바코드 데이터⁷⁾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보였다. 첫 번째는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⁸⁾ 가격이 자주 변한다는 사실, 두

Kang and Usher(2018)의 연구에 의하면 가격경직성은 경기 역행적이다. 이러한 경기 변화에 따른 가격경직성의 변화는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대표적으로 Cogan et al.(2010)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Smets-Wouters 모형에서는 재정승수가 1 내외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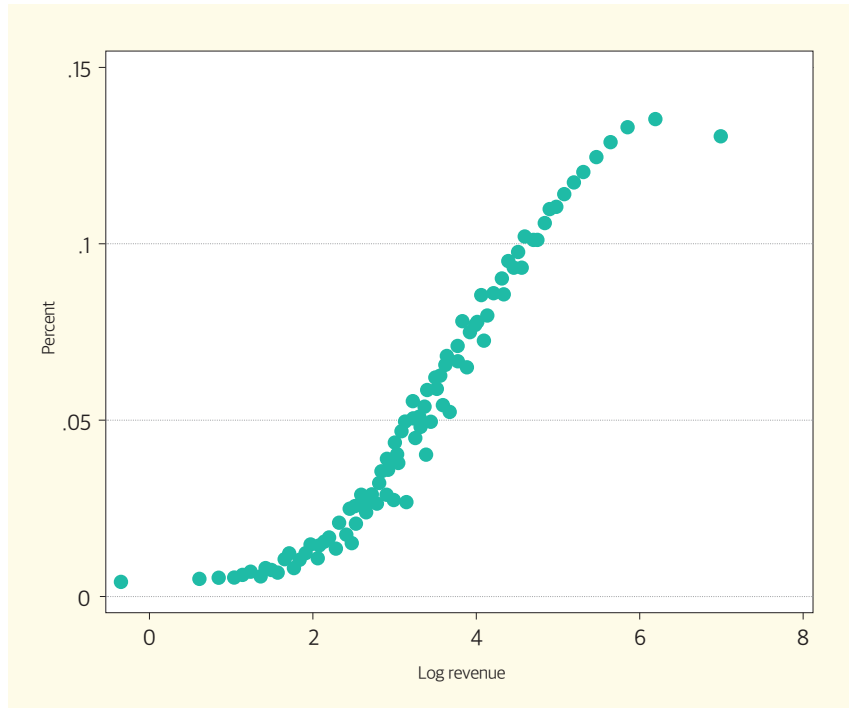
6) 한편, 재정승수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는 가격경직성 이외에도 실질경직성과 통화정책의 방향성 등이 있다.

7) 미국 전역에 걸친 여러 슈퍼마켓 편의점 등 90여개의 체인과 공조하여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바코드 스캐너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 세트(data set)다. 주 단위로 각 상품의 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다. 데이터에 포함된 고유 제품의 가짓수는 2,600만개가 넘으며 미국 전체 슈퍼마켓 판매량의 절반가량이 이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ng and Usher(2018)는 이 데이터 세트의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8) Kang and Usher(2018)에서 상품의 정의는 고유의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고유의 제품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제품이어도 서로 다른 판매처에 있는 제품은 다른 상품으로 취급된다.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이 자주
 변한다는 사실은
 [그림 3]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3] 매출액과 가격 변경 빈도



출처: Kang and Usher(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번째는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을 변경할 때 그 변경 폭은 평균적으로 더 작다는 것을 보였다.

우선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이 자주 변한다는 사실은 [그림 3]을 통해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3]은 이 연구의 데이터 샘플에 포함된 모든 관측치를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한 뒤 각 백분위별로 평균 매출액과 가격 변경 빈도를 계산한 후 이를 그래프에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의 가로축은 매출액의 로그값을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매달 가격이 변경될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 표시된 각 점들은, 매출액 기준의 백분위별 평균 매출액과 가격 변경 빈도를 표시하고 있다. 즉, 가장 우측에 있는 점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상품들의 백분위를 나타내고 있고 가장 좌측에 있는 점은 매출이 가장 낮은 상품들의 백분위 값이다.

[그림 3]을 통해 매출액과 가격 변경 빈도 간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매출액 전 구간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샘플의 상품가격은 평균적으로 19개월에 한 번 변경되는 반면, 매출액이 매우 높은 상품들의 경우 6~7개월에 한 번 정도 가격이 조정되고, 매출액이 매우 낮은 상품들은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가격 변경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식 (13)을 이용하여 매출액과 가격 변경 빈도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D_{ijt} = \alpha_t + \beta \log rev_{ijt-1} + \epsilon_{ijt} \quad \text{식 (13)}$$

변수 D_{ijt} 는 판매처 j 에서 판매되는 제품 i 가, t 달에 가격을 변경했다면 1의 값을 갖고, 변경하지 않았다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이 변수를 각 상품의 $t-1$ 기의 매출액 로그값에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회귀모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수 β 는 상품의 매출액이 1% 상승할 때 상품의 가격이 변경될 확률이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식 (13)으로 추정된 기본 모형 이외에도 상품의 종류별 고정효과(fixed-effect), 판매처 및 고유 제품번호 등의 고정효과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매출액과 가격 변경 빈도

	Baseline	Product Category	Store, UPC
log revenue	0.0276 (0.0007)	0.0290 (0.0008)	0.0282 (0.0007)
observations	349 million	349 million	349 million
R-squared	0.029	0.041	0.057

주: Standard errors clustered on month, store, and UPC separately
출처: Kang and Usher(2018), Table 2 일부 발췌

회귀분석에서 역시 매출액과 변경확률 간의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예컨대, 첫 번째 칸의 추정치인 0.0276의 경우, 한 상품의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그 상품의 가격 변경 확률은 0.276%(percentage point) 증가한다는 것

매출액의 차이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처의 차이, 혹은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매출액이 높을수록 가격이 자주 변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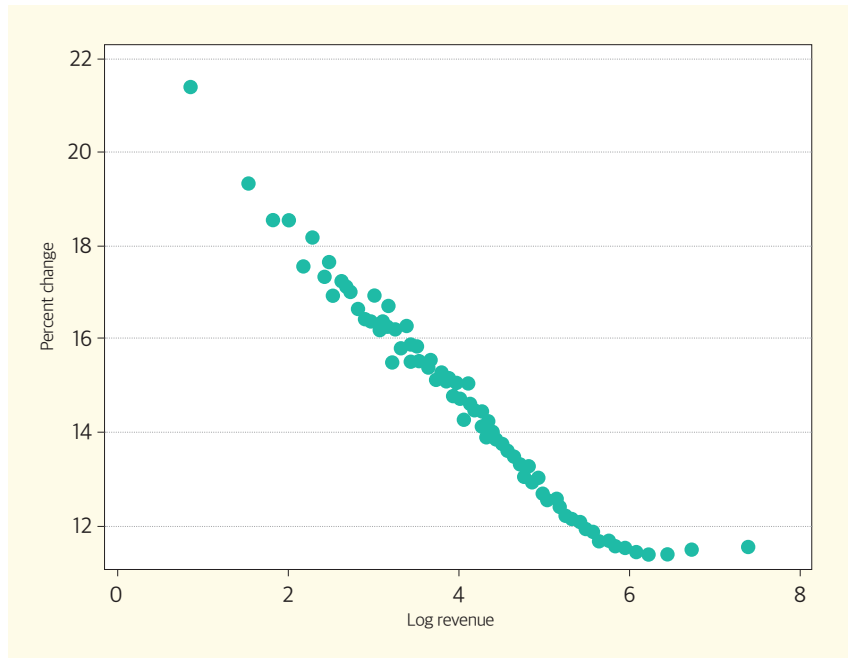
매출액이 큰 상품일수록
가격 변경 시의
가격 변화 폭이
평균적으로 더 작다.

을 의미한다. 예컨대 매달 가격이 변경될 확률이 5%인 상품의 매출액이 10% 증가할 경우 가격이 변경될 확률이 5.276%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들, 상품의 종류, 판매처, 고유 제품번호 등과 같은 변수들로 통제해봐도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곧 매출액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와 관계없이, 가격조정 과정과 매출액 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매출액의 차이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처의 차이, 혹은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매출액이 높을수록 가격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위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매출액이 큰 상품일수록 가격 변경 시의 가격 변화 폭이 평균적으로 더 작다는 것이다. [그림 4]가 이를 보여준다. 가로축은 매출액 기준 백분위별 평균 매출액의 로그값을, 세로축은 가격 변동 폭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둘 간에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평균

[그림 4] 매출액과 가격 변경 폭



출처: Kang and Usher(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적인 가격 변동 폭은 약 15%이며 매출액이 매우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의 가격 변동 폭은 약 10% 차이가 난다.

본고는 다음 식 (14)로 이 관계를 추정했다.

$$|\Delta p_{ijt}| = \alpha_t + \beta \log rev_{ijt-1} + \epsilon_{ijt} \quad \text{식 (14)}$$

변수 $|\Delta p_{ijt}|$ 는 가격의 로그변화 값의 절댓값을 나타낸다. 식 (14)의 계수 β 는 상품의 매출액이 1% 상승할 때 상품의 가격 변화 폭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 (14)의 기본 모형 이외에도 상품의 종류별 고정효과, 판매처 및 고유 제품번호 등의 고정효과 등 통제변수를 포함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의 결과 역시 매출액과 가격 변동 폭 간에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각종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경우에도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칸의 -0.0172의 값은, 상품의 매출액이 10% 증가할 경우, 그 상품의 가격 변경 시 변경 폭은 0.172%(percentage point)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매출액과 가격 변경 폭

	Baseline	Product Category	Store, UPC
log revenue	-0.0172 (0.0011)	-0.0081 (0.0010)	-0.0019 (0.0009)
observations	18.5 million	18.5 million	18.5 million
R-squared	0.029	0.093	0.246

주: Standard errors clustered on month, store, and UPC separately
출처: Kang and Usher(2018), Table 3 일부 발췌

2.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성

이후 Kang and Usher(2018)는 이 두 가지의 실증적 사실들이 메뉴코스트 모형과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메뉴코스트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모형을 일컫는다. 이 모형에서는 개

매출액과 가격 변동 폭 간에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품의 매출액 역시
경기변동과 더불어
분포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평균 매출액이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떨어질뿐만 아니라,
상품 간 매출액의
분포의 분산 역시
실업률이 상승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된다.

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가격과 실제 가격이 비교적 근접해 있다면,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 가격의 무대응구간(inaction region)이 형성된다. 이 연구는 매출액이 큰 상품일수록 최적 가격 주위로 형성되는 무대응구간의 범위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격이 최적 가격에서 벗어날 경우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그 가격이 최적 가격으로 재조정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9), 10)}

즉, 최적이 아닌 가격으로 인한 판매자의 손실은 매출에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판매자들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가격을 재조정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가격의 변경 빈도는 증가하는 한편, 가격 변경 시의 변경 폭은 작다. 나아가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통화정책과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격의 변경 정도 역시 높다는 것을 보였다.

한편 상품의 매출액 역시 경기변동과 더불어 분포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평균 매출액은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떨어질뿐만 아니라, 상품 간 매출액의 분포의 분산(cross-sectional variance) 역시 실업률이 상승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된다. 즉 불황에서 모든 상품의 매출액이 평균적으로 줄어들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높은 상품일수록 매출이 떨어지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표 3>은 이 결과를 보여준다. 실업률이 1% 증가할 경우 상품의 매출액 평균값은 1.3%, 중간값은 1.4% 감소하고, 표준편차는 0.37% 감소, 그리고 매출액 상위 90%의 상품과 하위 10% 상품 간의 매출액 차이는 1.1%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 분포의 변화

	Mean	Median	Std deviation	Spread
unemployment rate	-1.293 (0.392)	-1.436 (0.435)	-0.370 (0.159)	-1.115 (0.408)
observations	351,125	351,125	351,125	351,125
R-squared	0.686	0.674	0.597	0.603

주: Standard errors clustered on month, market and product category
출처: Kang and Usher(2018), Table 4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격의 반응 정도가

9) 실제 가격이 최적 가격에서 벗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최적 가격의 상승과 기업의 한계비용 변화로 인한 최적가격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10) 메뉴코스트 모형 역시 큰 범위 안에서 뉴케인지언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뉴케인지언 모형에서 기업의 가격결정 과정을 정교하게 모형화한 것이기에, 제1장의 분석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매출액과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태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황에서 매출액이 줄면 통화충격에 반응하는 가격의 반응 역시 감소하게 된다. 또한 매출액 분포의 분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특히 매출액이 큰 상품들에서, 즉 총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품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격은 호황보다는 불황에서 더 경직적이다. 이는 정책충격에 대한 가격의 반응이 불황에서 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수량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총생산의 변화는 불황에서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구에서 살펴본 가격결정 과정과 통화정책 간의 관계는 비록 미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연구에서 밝힌 사실들이 단순히 특수하고 우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 원리에 부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연구는 왜 가격결정 과정이 매출액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보여주고 있고, 새롭게 발견한 실증적 사실들은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또한 앞의 연구에서 보인 실증적 결과는 미국 내의 다양한 지역과 경제상황 속에서 강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과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3. 정량적 모형을 통한 정책실험

연구는 통화정책의 상태의존성을 뒷받침하는 경제학적 원리를 정량적 메뉴코스트 모형에서 보여준다. 연구에 사용되는 모형은 개별 기업들이 가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메뉴코스트 모형이며, 각각의 기업들은 생산성과 상품 수요에 고유한 충격(idiosyncratic shock)을 받는다. 생산성과 수요 충격은 기업들의 매출액과 가격이 적절한 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생적인 총수요 충격과 더불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 분포의 변화를 재현하기 위한 외생적인 개별 수요 변화 함수가 존재한다.¹¹⁾ 이 모형은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가격 변경 빈도, 가격 변경 폭, 매출액 분포 등의 사실과, 매출액과 가격 변동 간의 관계를 충실히 재현해낸다. 또한 매출액 분포와 경기변동 간의 상관관계 역시 <표 3>에 나타난 데이터에서의 변화와 매우 흡사하다.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의 변화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가격의 반응 정도가
매출액과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태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모형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및 결과는 Kang and Usher(2018) 참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정책을 통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때 가격경직성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총생산의 증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에서 경기가 불황일 때와 호황일 경우 각각 통화정책의 효과를 실험해본 결과 불황과 호황에서의 통화정책 효과의 크기 차이는 43%로 나타난다.¹²⁾ 이때 실험에서 재현한 불황과 호황에서의 총생산량의 차이는 7%로 비교적 큰 경기변동과 유사한 수준이다. 실험 결과 통화정책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태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재정정책에 대한 함의

한편 이 모형에서 실행한 정책실험은 통화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유사성을 고려할 경우 이 연구의 결과가 재정정책의 상태존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화정책은 실질이자율의 조정을 통해서 총수요의 변화를 유도하는 반면, 재정정책은 직접적인 정부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변화시킨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정책을 통하여 총수요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때 가격경직성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총생산의 증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통화정책은 정책당국이 실질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실질이자율이 변하면 기간 간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로 인하여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실질이자율이 낮아지면 소비의 비용(저축의 기회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때 늘어난 수요를 소화하기 위하여 생산을 늘릴 때 임금과 같은 생산요소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의 증가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 생산비용의 변화가 가격에 일부만 반영되기 때문에 그 둔화의 정도가 감소한다. 따라서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는 재정정책에서 구축효과의 크기가 결정되는 원리와 유사하다.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의 소비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총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경직적일수록 생산요소의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구축 효과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12) 통화정책 효과의 크기는 총생산의 반응의 총합으로 계속된다.

앞서 제II장에서 살펴본 분석 틀을 통해서도 이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식 (12)에서 나타나듯 재정정책의 효과는 기업 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 η_u 에 의해 그 크기가 일정부분 결정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축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산비용의 상승이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상품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곧 기업의 한계수익률 감소로 나타나는데 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 η_u 가 바로 이 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가격경직성은 경기 역행적이기 때문에 한계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η_u)의 절댓값은 호황보다 불황에서 더 크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승수효과($\frac{dY}{dG}$) 역시 불황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한편 가격경직성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은 통화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통화정책에서 상태의존성이 나타나는 이유 역시 가격경직성에 따른 한계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 변화로 인한 것인데, 한계수익률 탄력성의 변화 정도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 거의 동일한 형태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IV. 결론

재정정책의 효과는 호황보다는 불황에 더 크게 나타나는 상태의존성을 지닌다. 이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경직성이 경기 역행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과 그 원인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많은 정책당국의 관심사였던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평상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단 총생산의 변화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태의존성의 원인이 가격경직성이라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의 비효율성 역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한계수익률 감소는 최적의 자원배분에 더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격경직성의 차이가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이 확인된

**재정정책의
상태의존성과 그 원인이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많은
정책당국의 관심사였던
극심한 위기상황에서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평상시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지역과 산업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 이는 비단 경기변동만의 현상이 아닌, 지역과 산업별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지역과 산업별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가격경직성과 한계수익률의 총생산 탄력성(η_y)을 통한 상태의존성에 그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식 (12)에서도 드러났듯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이 외에도 한계효용의 탄력성(η_u)과 생산요소 탄력성(η_v)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한 정책의 상태의존성 경로 역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KIPF](#)

참고문헌

- 손민규·이정욱, 「우리나라 재정정책 효과의 비대칭성 분석」, 『금융연구』, 제28권 제2호, 2014, pp. 45~74.
- Auerbach, Alan J. and Yuriy Gorodnichenko, “Measuring the Output Responses to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2), 2012a, pp. 1~27.
- _____, “Fiscal Multipliers in Recession and Expansion,” in *Fisc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b.
- Cogan, John F., Tobias Cwik, John B. Taylor, and Volker Wieland, “New Keynesian versus Old Keynesian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34(3), 2010, pp. 281~95.
- Fazzari, Steven M., James Morely, Irina Panovska, “State-dependent effects of fiscal policy,” *Studies in Nonlinear Dynamics and Econometrics*, Vol 19(3), 2015, pp. 285~315.
- Kang, DongIk, and Andrew Usher, “Product Revenue and Price Setting: Evidence and Aggregate Implications,” Working paper, 2018.
- Phillips, A. W., “The Relation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nited Kingdom, 1861-1957,” *Economica*, 1958.
- Woodford, Michael, “Simple Analytic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Vol 3(1), 2011, pp. 1~35.

일자리 재정정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제언

I. 서론¹⁾

2018년 12월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히 재정을 사용한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비록 정책효과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거의 항상 같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한 쪽에서는 일자리 재정정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의 시간만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다시 따질 필요 없는 고용 참사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의 수위가 평행선을 달린다고 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정치적인 이슈로 번지는 상황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비록 현재의 정책연구 여건하에서라면 정책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평가가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집행 중인 정책들의 경우 평가에 필요한 최선의 자료가 전부 집계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진행 중인 정책의 평가는 자칫 일부만 보는 선포문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되도록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효과에 대한 입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만일 현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자료로부터 다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면, 정책의 진정한 효과를 기다리는 쪽에서는 그 시간을 줄이는 이득이 있을 것이고,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실망한 쪽에서는 그 실망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불필요하며 건설적이지 않은 논란들을 사전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wchang@kipf.re.kr)

1) 본고는 장우현·강희우(2018),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의 내용에 기초하여 재정포럼의 목적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적으로 분명히 막기 위해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첫째, 본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는 기업과 개인을 포함한 일자리 생태계 자료는 물론 정책집행 이력까지 모두 과거의 자료(2010~2015년까지의 자료)이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 있어 실제 중요한 재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정책 예시로 들고 있다.²⁾ 물론 본고에서는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정책 제언을 하겠지만, 만일 본고에서 개선점을 발견했다고 해도 이는 이전에 없었던 문제가 현 정부에서 새로 생긴 것은 명백히 아니다. 둘째, 본 분석에서는 정책당국이나 연구자들이 이전에 충실히 활용할 수 없었던 추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집행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이는 기술과 자료의 발전에 의한 것이지 과거의 정책입안자나 집행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함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볼 때에, 본고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대안은 과거의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분명히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장우현·강희우(2018)에서 구축한 새로운 기업-개인-재정정책 통합자료를 기초로 일자리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해당 연구에서는 2010~2015년까지의 한국기업데이터(KED)를 활용한 기업 패널자료와 고용보험의 사업장 및 가입자 패널자료를 연계하고, 규모와 수요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3사의 지원 이력과 조달시장 지원 이력을 패널자료로 함께 연계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할 경우 이전과 달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이동성 분석이 가능하며 산업과 기업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상실 분석은 물론 이와 연계된 정책 분석이 가능하다.³⁾

본고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서론과 이어지는 제II장에서는 새로이 구축한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생태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는 강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지는 제III장에서는 제II장에서의 발견을 기초로 현재 성과지표와, 이보다 더 국민경제적 목표와 정렬된 성과지표에 따라 정책을 비교·평가하여, 정책의 설계와 성과 관리가 국민의 요구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 특히 재정을 사용한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가 뜨겁다. 비록 정책효과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거의 항상 같린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갈등의 수위가 평행선을 달린다고 할 정도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 본고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주 목표로 한 사업들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평가 예시 결과를 제시하지 않으며 이는 본 문단에서 제시한 의도에 따른 것이다.

3) 자세한 내용은 장우현·강희우(2018)를 참고

일자리 재정정책은
 노동의 공급 측면 외에도
 수요 측면, 즉 기업의
 효율성이나 산업 동학을
 고려한 국민경제적
 장기고용능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제II장과 제III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실제 일자리 생태계 특성에 보다 적합한 일자리 재정정책의 설계 및 집행, 성과관리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II. 개인-기업-정책 연계자료를 활용한 일자리 생태계 분석

일자리 재정정책은 노동의 공급 측면 외에도 수요 측면, 즉 기업의 효율성이나 산업 동학을 고려한 국민경제적 장기고용능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일자리 재정정책은 경제의 효율화 기제나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수요 창출에 대한 충실한 고려 없이 현재 관찰되는 단순한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용과 임금 정보, 산업 및 기업 특성 정보, 정책 정보를 연계한 종합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생태계와 관련한 기초 분석을 먼저 다루기로 한다. 우선 기업자료와 고용자료를 결합할 경우 어느 정도의 고용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는 기업과 고용자료를 결합하므로, 정책평가 이전 단계에서도 고용자료나 기업자료 단독 분석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초 분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데이터 자료는 연간 30만개 수준의 기업을 포함하며, 고용보험 사업장 자료와 연계하여 확인해보면 이들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는 <표 1>과 같이 매년 1천만명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자료로 본다면 2015년 기준 피보험자 수 1,200만명 중 650만명 정도의 자료가 추적 가능하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상시근로자들 중 일용직 근로자 등이 제외되어, 상시근로자와 피보험자 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자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고용은 포함하지 않고, 한국기업데이터에 포함되는 연간 30만개 기업 외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정보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드시 단점만은 아니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일반적인 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가 본 자료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에 대한

4)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우현 외(2013) 참고

이해에 있어서는 오히려 목적 적합한 자료라고도 볼 수 있다.⁴⁾ 현재 구축한 자료는 경제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주요 30만개 기업에서 종사하는 650만명의 자료는 개인단위부터 산업단위까지 경력추적 및 정책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자료에 포함된 기업들의 경우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총 3,780조원 규모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6년 수행된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물리적 사업장을 지닌 모든 사업체의 총매출액이 5,303조원이므로, 매출액 기준의 규모로 보면 경제 전체 71% 수준의 기업들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자리
변화 추세를 검토해보면
일자리 증가량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어 2018년에 나타난
현상과 일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및 상실 현황⁵⁾

(단위: 명)

연도	상시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연도별 취득	연도별 상실	취득-상실
2010	8,509,938	5,337,504	2,521,321	2,154,029	367,292
2011	8,037,371	5,694,270	2,664,099	2,268,882	395,217
2012	9,619,490	6,185,825	2,837,002	2,436,273	400,729
2013	9,772,773	6,423,759	2,870,198	2,519,135	351,063
2014	10,065,395	6,577,441	2,929,445	2,629,397	300,048
2015	10,095,879	6,532,824	2,920,193	2,620,264	299,929

주: 1) 고용보험 취득이란,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되어 근로를 개시한 경우 등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보험 상실이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 및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본고에서의 취득과 상실은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발생 및 상실 기준으로 정의한 일자리 취득과 상실지표로 해석해야 함.

출처: 한국기업데이터(2018)와 고용보험자료(2017)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1. 일자리 변화 추세: 양질 취득 비중 증가와 일자리 순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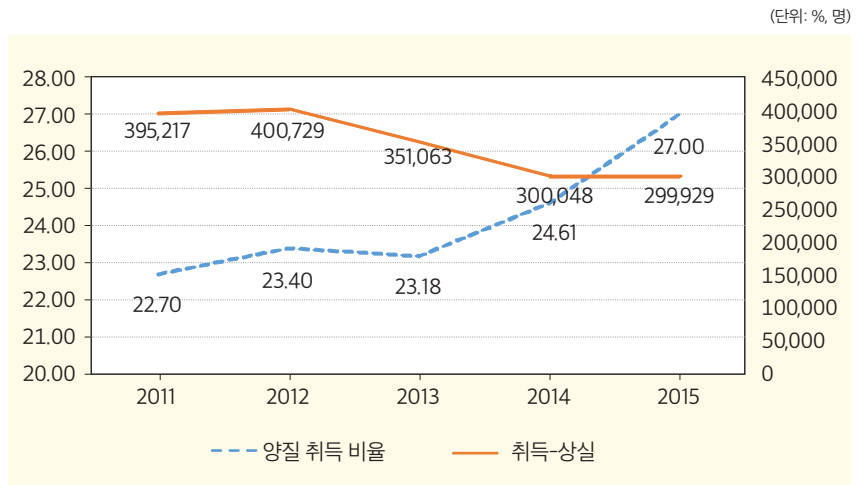
먼저 짚어볼 점은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변화 추세가 2018년에 나타난 일자리 변화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0년부터 2015년까지도 일자리의 증가량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어 최근의 변화가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다만 최근의 정책 변화는 이와 같은 변화를 양적으로 크게 가속화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는 최저임금

5) 상시근로자 수 18.6% 증가가 확인되는바, 포괄 규모는 크게 다름에도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수행하는 전수조사인 경제총조사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종사자 수가 18.4% 증가한 것과 일관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률은 소득주도성장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여 일자리 품질을 개선하고 있을 개연성은 있으므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를 상승이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과 연계되어 일자리 품질을 개선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을 함의한다 하겠다. 최저임금률은 소득주도성장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여 일자리 품질을 개선하고 있을 개연성은 있으므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연도별 양질 일자리 창출 비율과 일자리 순증 변동 추이



주: 양질의 일자리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월보수액 200만원으로 정의함. 물가조정 시 임금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활용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2. 일자리 생태계의 역동성

<표 1>을 보면 통합자료에서 2015년 신규 취득 건수는 총가입자 6,532,824명 중 2,920,193명으로 단순 취득률은 44.7%, 신규 상실 건수는 2,620,264명으로 단순 상실률도 40.11%에 달한다. 이는 고용보험 자체만 검토했을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의 취득률과 상실률이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동성이다. 참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만 활용하여 분석해보면 순수피보험자 수 12,655,202명 중 취득자 수는 6,880,808명(단순 취득률 54.4%), 상실자 수는 6,412,984명(단순 상실률 50.7%)에 달한다.

참고로 미시자료 수준에서 공개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고용에 있어 2018년 현재 가장 포괄 규모가 크고 신뢰성이 높은 집계 자료는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이다. 일자리 행정통계는 통계청이 확보할 수 있는 행정통계를 집계하여 일자리의 현황과 창출 및 상실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데, 가장 최신 자료인 2016년 기준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일자리 규모 2,323만개 중에서도 단순 취업률이 31.64%, 상실률은 30.70%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인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6년 순수 일자리 증분은 22만개였다. 만일 순수 일자리 증분만 봤을 때 22만개 정도라면 재정을 동원해서 그 수치를 조금 증가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칫 쉽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735만개의 일자리 취득과 713만개의 일자리 상실이 있다. 만일 정책당국이 선별 없이 전체 일자리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1,448만건의 일자리 변동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참고로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자리 교체율은 미국의 통계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의 이직률(separation rates)은 약 43%임을 확인할 수 있다.⁶⁾

3. 일자리 총변화와 순변화의 차이와 중요성

구축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절대다수의 일자리 상실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상실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새로운 짝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임을 나타낸다. 산업 소분류 단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29개 산업 관측치의 고용보험 취득량과 상실량을 기반으로 분석하면 일자리 상실과 창출의 상관계수는 0.9966(결정계수 0.9932)에 달하며 이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업단위에서 연간 일자리 상실과 창출이 사실상 선형의 1:1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일자리의 상실 없는 일자리의 창출이나 일자리의 창출 없는 일자리의 상실의 발생은 극히 드문 현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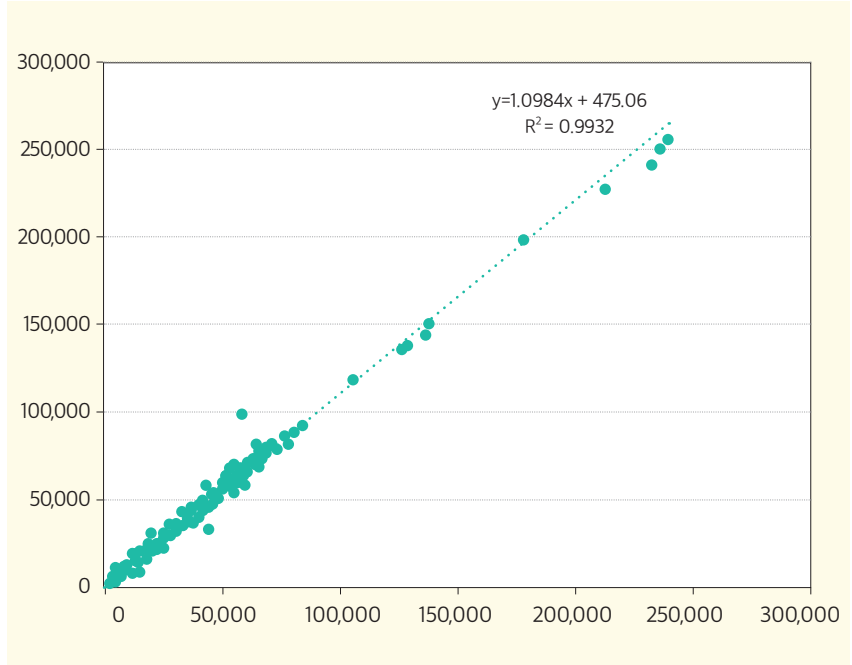
구축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절대다수의 일자리 상실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상실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새로운 짝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임을 나타낸다.

6) <https://www.bls.gov/news.release/jolts.t16.htm>, 검색일자: 2018. 7. 31.

일자리 정책에서 최종 목표로 평가되는 것은 일자리의 순증가이지만, 최종적으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창출과 상실을 식별하기란 어렵다.

[그림 2] 2011~2015년 연간 소분류산업별 고용보험 상실(x축)과 취득(y축) 분포도

(단위: 명)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일자리 정책에서 최종 목표로 평가되는 것은 일자리의 순증가이지만, 사전적으로 최종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창출과 상실을 식별하기란 어렵다. 실제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현재의 정책 대상은 총변화, 즉 개별 일자리의 창출과 상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청자격 자체에도 기초적인 제한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그림 3]은 2015년 기준으로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업별 고용보험 취득 수(총증가), 상실 수(총감소), 그리고 피보험자 순증감과 2014~2015년 비교 피보험자 순증감을 나타낸 그림이다. 2015년 기업 기준 피보험자 증감과 2014~2015년 피보험자 증감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2014년을 구성하는 기업들과 2015년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좌로부터 우로의 순서는 신규 취득률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신규 취득률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료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대비 해당 연도의 고용보험 신규 취득 피보험자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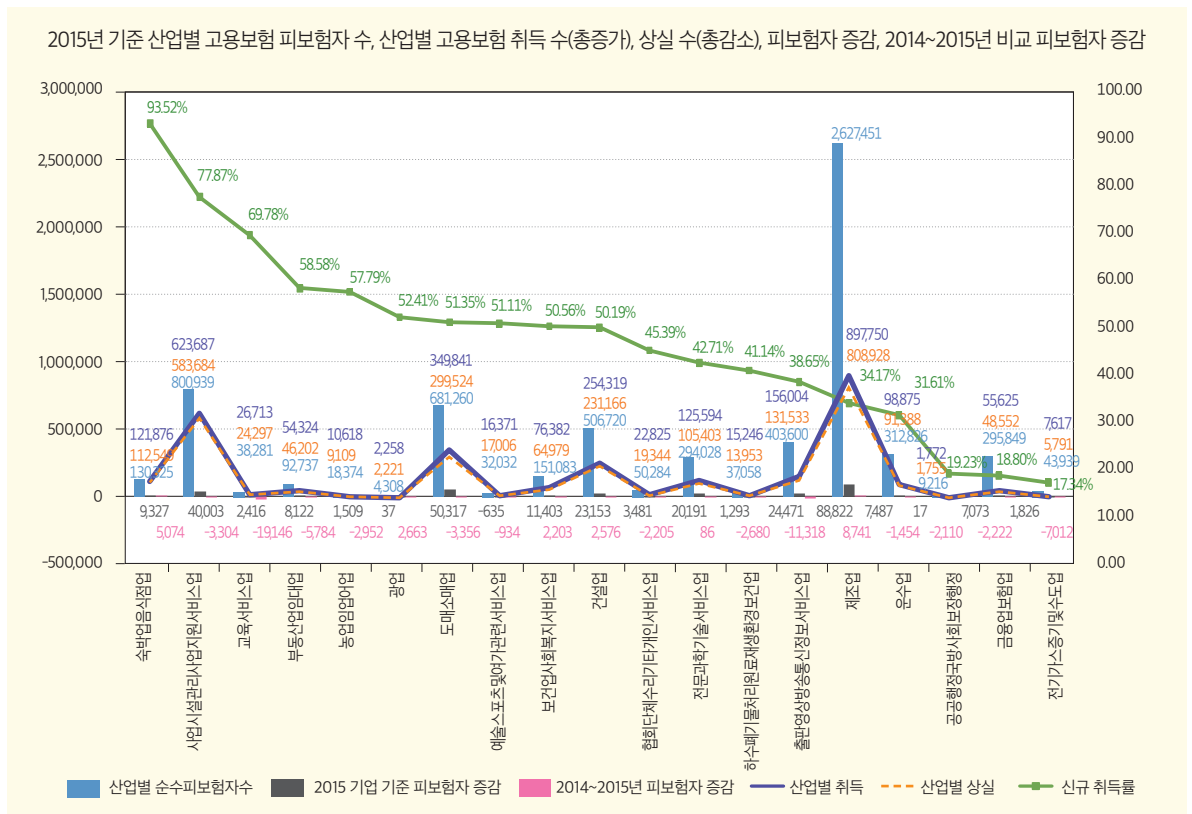
[그림 3]에 의하면 실제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신규 취득률이 전체의 93.52%에 달하는데, 신규 취득은 동일인이 기록한 복수의 연간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자리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운수업의 경우 신규 취득률이 낮게 나타나지만, 이들 산업도 신규 취득률은 30%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⁷⁾ 공공행정 분야도 19.23%의 신규 취득률을 나타내는데, 이 또한 2017년 미국 공공부문의 일자리 상실률 18.3%와 비교 가능한 수준의 수치라는 점이 흥미롭다.

대분류산업별 총증감과 순증감 수치를 보면 일자리 이동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참고로 소분류별로 보면 자동차 완성품 제조업의 상실과 창출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그림 3] 2015년 대분류산업별 총증감과 순증감

(단위: 명, %)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을 창업기 기업과
이외를 비창업기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추가 고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라기보다
창업기 기업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일자리 순증분 분해: 기업 규모와 업력별 일자리 창출

본 절에서는 일자리 순증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본 자료의 특성을 살려 기업 특성인 기업 규모와 업력에 따른 일자리 순증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2>는 순수 일자리 증가의 요인을 찾기 위해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을 창업기 기업과 이외를 비창업기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것이다. 추가 고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라기보다 창업기 기업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기 중소기업은 기업당 피보험자 증분이 3.53명 수준이지만, 비창업기 중소기업은 0.27명에 그친다. 또한 창업기 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분의 61%를 차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업 규모와 업력 분류별 일자리 창출

(단위: 개,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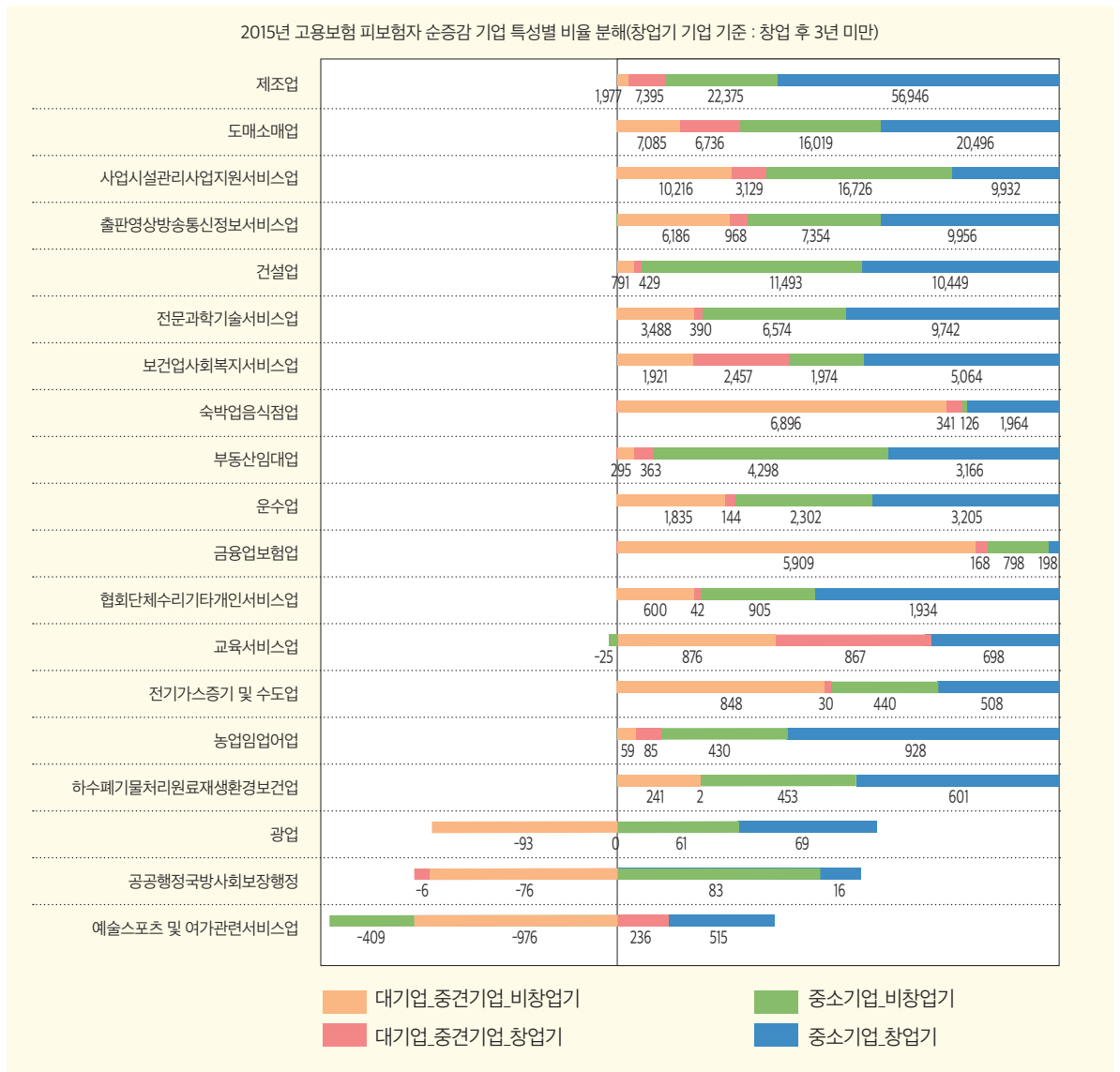
전체사업, 2015년	기업 수	기업 수 비중	피보험자 수	피보험자수 비중	기업당 피보험자 수	피보험자 증분	피보험자 증분 비중	기업당 피보험자 증분
창업기 중견/ 대기업	352	0.12	44,182	0.68	125.52	23,776	7.89	67.55
비창업기 중견/대기업	6,355	2.08	2,586,098	39.87	406.94	49,214	16.34	7.74
창업기 중소기업	45,358	14.58	227,262	3.50	5.01	160,163	53.16	3.53
비창업기 중소기업	253,308	82.95	3,629,239	55.95	14.33	68,126	22.61	0.27
합계	305,373	100.00	6,486,781	100.00	21.24	301,279	100.00	0.99
중견/대기업	6,707	2.20	2,630,280	40.55	532.46	72,990	24.23	10.88
중소기업	298,666	97.80	3,856,501	59.45	19.34	228,289	75.77	0.76
합계	305,373	100.00	6,486,781	100.00	552	301,279	100.00	0.99
창업기 기업	45,710	14.97	271,444	4.18	130.53	183,939	61.05	4.02
비창업기 기업	259,663	85.03	6,215,337	95.82	421.27	117,340	38.95	0.45
합계	305,373	100.00	6,486,781	100.00	551.79	301,279	100.00	0.99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또한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별 산업별로 보아도 전체 변화가 아닌 순변화에서 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기업은 창업기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고용보험 대분류 기준 순증변화 기업 규모/업력별 분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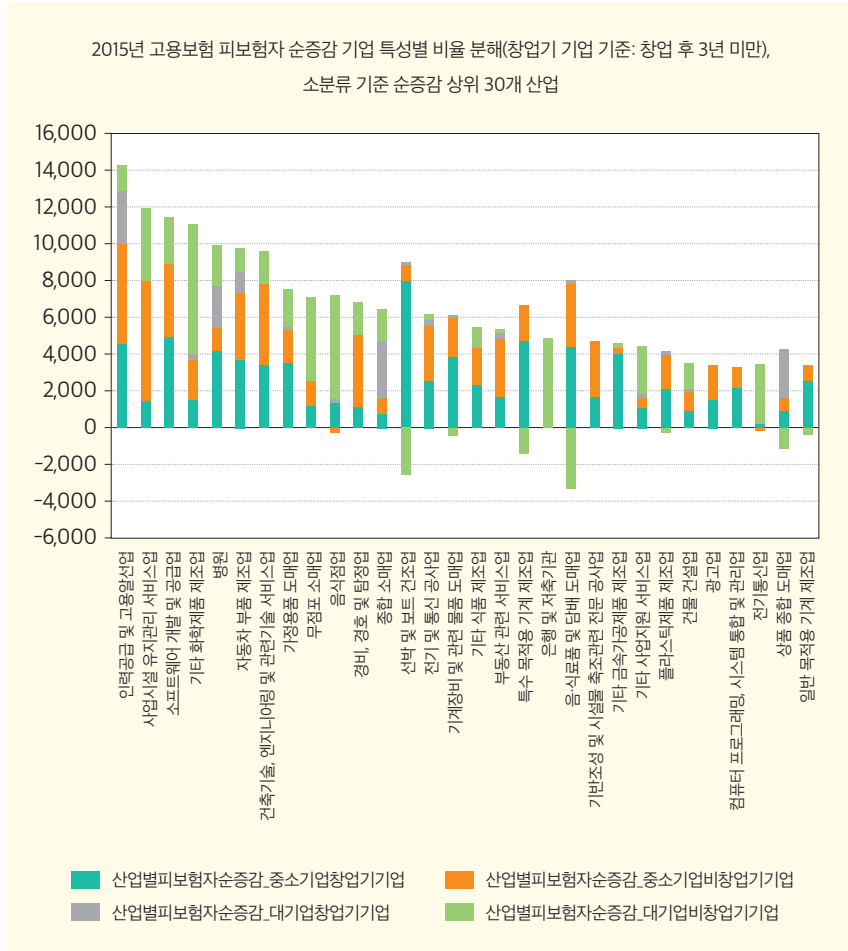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중소기업 정책이 창업기 중소기업이 아닌 비창업기 중소기업에 조준되어 있을 경우, 이는 일자리 순증감보다는 총증감에 개입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다.

[그림 5] 주요 30개 소분류산업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순증감 기업 규모/업력별 분해

(단위: 명)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따라서 고용에 대한 기여를 주된 정책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중소기업 정책이 창업기 중소기업이 아닌 비창업기 중소기업에 조준되어 있을 경우, 이는 일자리 순증감보다는 총증감에 개입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5. 2015년 취업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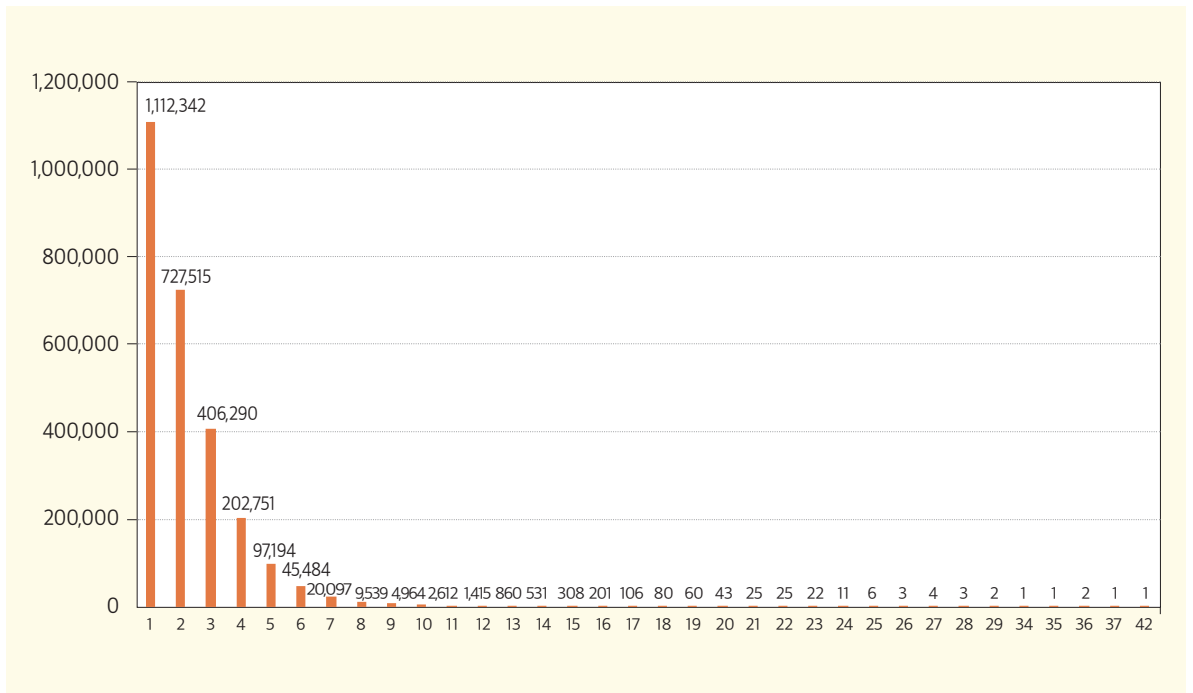
가. 이직 현황

KED-고용보험 결합에 의한 일자리 이동경로자료에 의하면 2015년 취득 일자리 취업자 기준으로 2010~2015년의 취득 평균은 2.16회, 최다 취득기록은 42회이다. 총 2,632,500명 중 1,520,158명이 2회 이상의 취득을 신고하여, 2015년 고용보험 취득자의 57%가 지난 5년간 한 번 이상 이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고용보험
취득자의 57%가
지난 5년간 한 번
이상 이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2015년 취득자 2010~2015년 고용보험 취득 횟수 빈도

(단위: 회, 명)



출처: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저자 작성

2015년 총취득 일자리
2,555,434개 중
995,819개가 청년
일자리, 914,987개가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 기준의 양질의
일자리이며 247,631개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각각 6:4의 비율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년 양질의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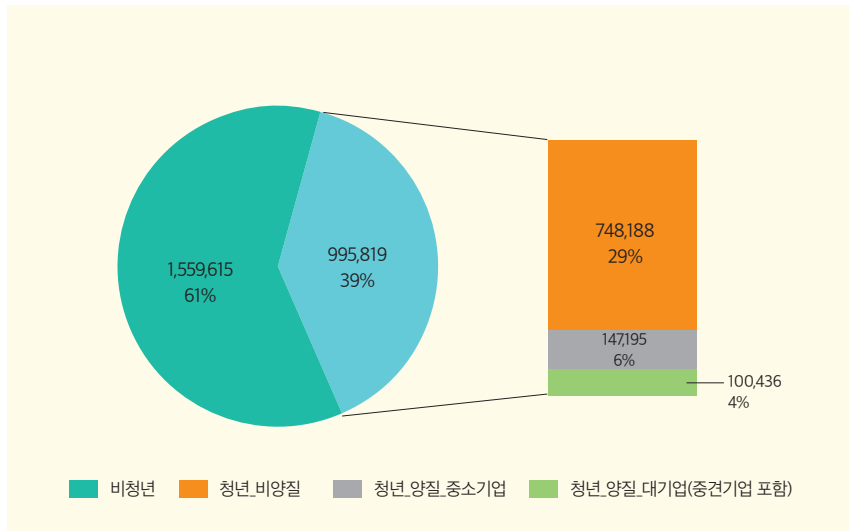
양질의 일자리 기준으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240만원 이상과 200만원 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해보기로 하자. 월평균 보수액 240만원 기준으로, 2015년 총취득인원 2,555,434명⁸⁾ 중 613,730개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 중 121,895개가 청년이 얻은 양질의 일자리이다. 본고에서 청년의 정의는 15~29세⁹⁾로 하였다.

참고로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기준으로는, 총취득인원 2,555,434명¹⁰⁾ 중 914,987개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이 중 247,631개가 청년 양질의 일자리이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기준으로 청년 양질의 일자리 247,631개 중 147,195개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이며, 100,436개가 대기업-중견기업 일자리로서 약 6: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2015년 신규 취득 기준 청년 일자리(품질 및 기업 규모별)

(단위: 개, %)



주: 15~29세를 청년으로,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한 경우임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8) 5년간 10회 초과 취득자 및 기업 이상치를 제외한 숫자임
9) 15~29세가 청년의 기준이 되나,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청년을 15~34세로 정의하고 있음
10) 5년간 10회 초과 취득자 및 기업 이상치를 제외한 숫자임

다. 산업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현황 및 경력 디딤돌 현황: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본 절에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 지표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실제 많이 일어나는 소분류 단위 산업들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청년들을 많이 이직시킨 소분류단위 산업들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고¹¹⁾ 양질의 일자리로 이직한 사람들의 이전 일자리가 어떤 규모의 기업들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년 취업자들의 취업 분석 결과, 전통의 제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일부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5년 소분류 산업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현황(상위 20개)

(단위: 개, %)

소분류 산업명	청년 양질의 일자리 수	비중
자동차 부품 제조업	13,048	5.27
전자부품 제조업	11,663	4.7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294	4.56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1,181	4.5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7,804	3.15
병원	7,637	3.08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6,547	2.64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6,049	2.4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5,963	2.4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5,134	2.07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530	1.83
은행 및 저축기관	4,505	1.8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4,493	1.81
가정용품 도매업	4,425	1.79
무점포 소매업	4,208	1.70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134	1.67
반도체 제조업	4,030	1.63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022	1.62
의약품 제조업	3,617	1.46
봉제의복 제조업	3,366	1.36

주: 15~29세를 청년으로,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한 경우임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2015년 취업자들의
취업 분석 결과,
전통의 제조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일부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11) 전체 산업의 목록은 장우현·강희우(2018)를 참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한 이전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직 일자리 중 60%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경력자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청년을 양질의 일자리로 이직시킨 직전 산업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4> 양질의 청년 일자리로 이동한 청년의 이전 일자리 소속 산업(상위 20개)

(단위: 회, %)

소분류 산업명	양질 일자리 이직 빈도	비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12,096	8.16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987	5.39
전자부품 제조업	5,645	3.8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5,439	3.67
자동차 부품 제조업	5,184	3.5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4,809	3.24
병원	3,492	2.36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45	2.26
가정용품 도매업	3,188	2.15
음식점업	3,039	2.0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2,835	1.91
종합 소매업	2,737	1.85
봉제의복 제조업	2,599	1.75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2,481	1.6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05	1.6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2,382	1.61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2,353	1.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236	1.51
은행 및 저축기관	2,219	1.5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2,019	1.36

주: 15~29세를 청년으로,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한 경우임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표 5> 양질의 청년 일자리 이직자의 이전 일자리(기업 규모별)

(단위: 회, %)

기업 규모	빈도	비중
소상공인	10,882	7.24
소기업	30,990	20.62
중기업	53,370	35.5
중견기업	28,791	19.15
대기업	19,138	12.73
기타(금융, 병원 등)	7,146	4.75
합계	150,317	100

주: 15~29세를 청년으로,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정의한 경우임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한 이전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낮지 않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직 일자리 중 60%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는 중소기업 경력자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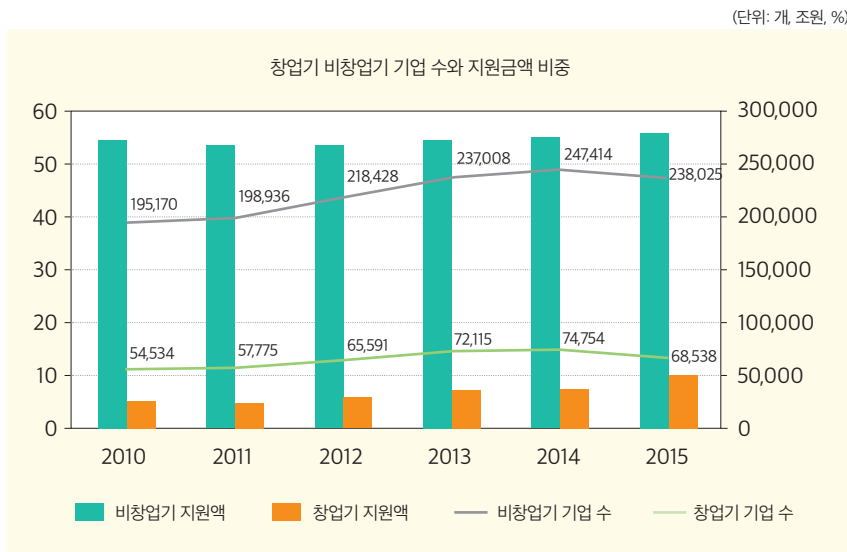
6. 정책 조준의 문제

가. 정책금융 기업연령별 배분

우리는 앞 절에서 일자리 증분은 창업기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을 기초로 한 정책 조준을 살펴보면 정책금융은 대부분 비창업기 기업에 배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이후로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비창업기 기업에 여전히 50조원이 넘는 금액이 겨냥된 반면, 창업기 기업에는 10조원 수준의 금액만이 겨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증분은
창업기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을
기초로 정책 조준을
살펴보면 정책금융은
대부분 비창업기
기업에 배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창업기-비창업기 정책금융 지원 현황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 및 정책금융지원 이력자료를 연계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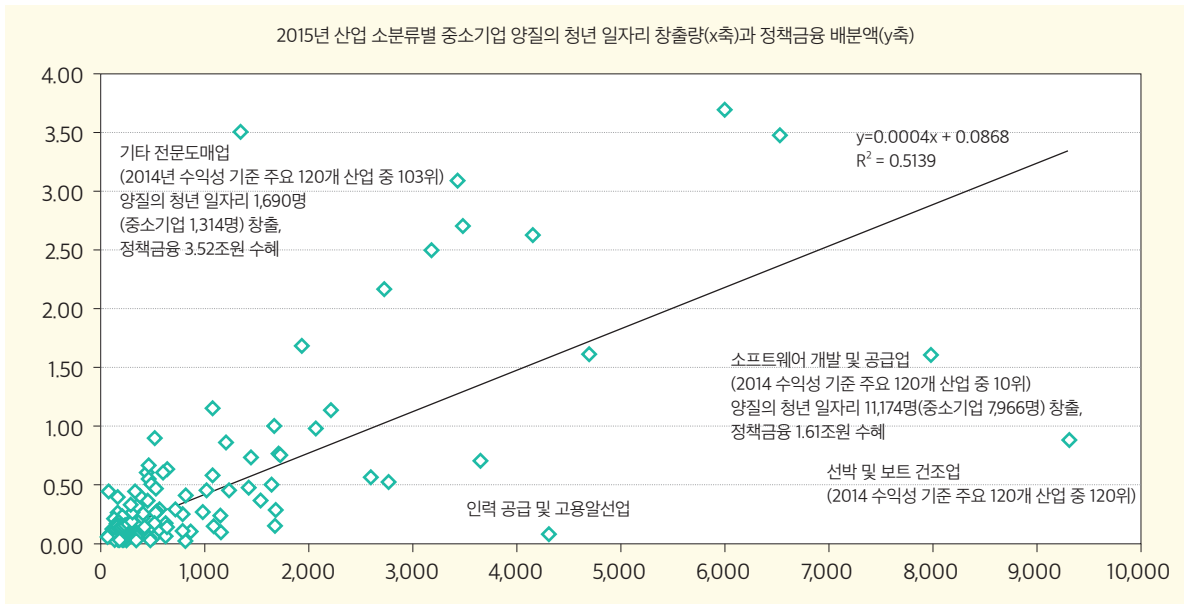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량이 높아질수록 정책금융 배분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편차 또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산업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책금융 배분 비율

또한 앞의 분석에 따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산업별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배분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9]은 2015년 산업 소분류별로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양과 실제 정책금융 배분액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량이 높아질수록 정책금융 배분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편차 또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7,966개 창출했음에도 정책금융은 1.61조원 수준의 수혜에 그친 반면, 기타 전문도매업의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1,314개 창출하면서 정책금융은 3.52조원 수준으로 수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만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된 정책 목표로 본다면 정책 조준을 재배분할 필요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림 9] 2015년 산업소분류별 중소기업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량과 정책금융 배분액 산포도

(단위: 명, 조원)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 및 정책금융지원 이력자료를 연계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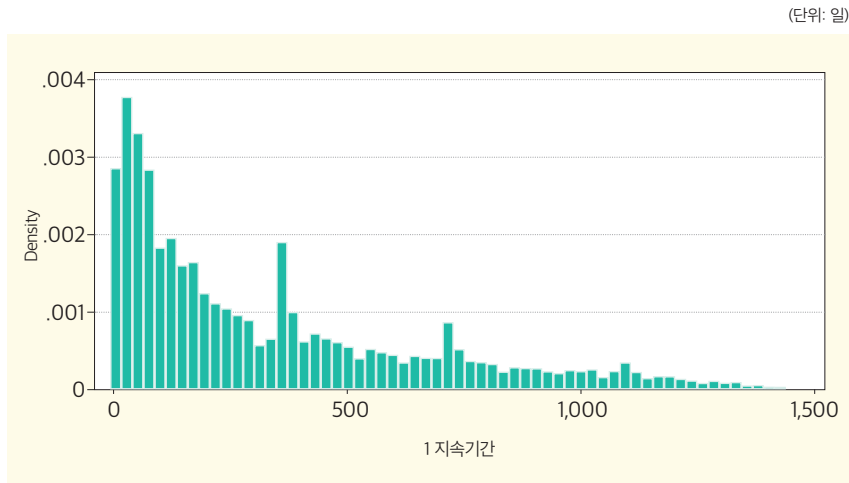
7. 2012년 취업자 분석

본 절에서는 2015년 취업자들의 과거 경력 추적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2012년 취업자들의 2015년까지의 미래 경력 이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자리 지속기간

[그림 10]은 고용보험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와 결합한 후 지속기간을 일자별로 히스토그램을 그려 표시한 것이다. 1년, 2년, 3년에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퇴사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2012년 취업자 취업 지속기간 분포도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나. 기업 규모별 이직과 월평균 보수액 상승 비율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2년 취업자 중 2015년까지 이직이 확인되고,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 규모 정보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며¹²⁾ 이직 전후 월평균 보수액 50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있는 인원은 총 937,952명이다.¹³⁾ 평균 이직까지 걸린 기간은 257일인데, 총 591,123

본 절에서는
2015년 취업자들의
과거 경력 추적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2012년 취업자들의
2015년까지의 미래
경력 이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2) 따라서 한국기업데이터에서 기타(병원 등 포함)로 분류된 기업들은 이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기타 기업에서는 약 4만 명 정도의 인원이 확인되며 이들을 포함해도 분석의 질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없으며, 대부분의 기타 기업이 병원 등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오히려 양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13) 월평균 보수액 500만원 초과 및 50만원 이하 인원은 인원수도 적지만 정책당국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는 집단이므로 이상치 제거 및 분포의 가시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이들을 포함하여도 분석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밝혀둔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 상승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63.02%)의 이직자 실질 취득 월평균 보수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직 전 취득 월평균 보수액의 평균은 1,589,253원, 이직 평균 월평균 보수액 증분 평균은 154,726원으로 9.74%의 실질임금 증가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의 30만개 주요 기업에서 한 해 취업자 중 100만명가량의 인원이 평균 257일 안에 이직하여 실질임금 9.74%의 증가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직이 일자리 짝짓기의 효율을 높여 일자리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이직의 일자리 적합도 및 품질개선 효과는, 이직 전후의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인원 수는 100,060명인데, 이직이 확인되는 경우 평균 실질 월평균 보수액이 7.41%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12년 취업자의 기업 규모별 이직 현황과 실질 월평균 보수액 변화

(단위: 명, %, 원, 일)

이직 분류	상승 인원	하락 인원	합계 인원	상승 비율	월평균 보수 (이직 전)	이직 증분	증가율	지속일
중소-중소	391,721	237,756	629,477	62.23	1,622,367	130,478	8.04	242
중소-대	69,158	34,594	103,752	66.66	1,512,324	250,593	16.57	279
대-중소	60,811	39,249	100,060	60.77	1,515,881	112,286	7.41	315
대-대	69,433	35,230	104,663	66.34	1,536,496	246,103	16.02	264
전체	591,123	346,829	937,952	63.02	1,589,253	154,726	9.74	257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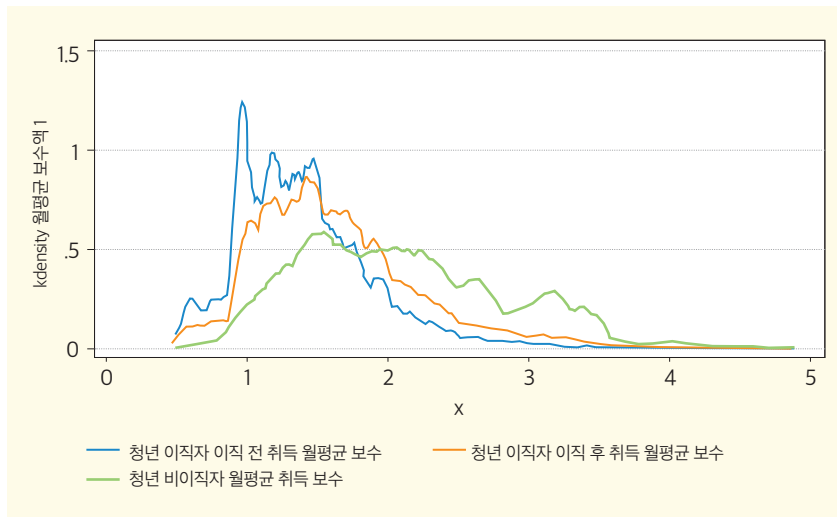
물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더 높은 임금 상승 가능성을 갖지만,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 해 취업자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업으로의 이직 기회는 전체 이직 기회 중 20%에 달한다. 실제 이러한 이직 기회 중 절반 가량이 중소기업 경력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적성과 노력을 고려할 때 이동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 즉 대기업으로의 이직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취업자 중 2015년까지 이직을 한 청년들의 이직 이전과 이후의 임금 분포 변화와 이직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임금 분포를 보면 [그림 11]과 같다. 물론 이직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분포가 더 높은 임금을 나타내지만, 이직을 통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2012년 청년 취업자들의 이직 전·후 월평균 보수 분포

(단위: 백만원)



출처: 한국기업데이터와 고용보험자료를 연계 분석한 것으로 저자 작성

2012년 취업자 중 2015년까지 이직을 한 청년들의 이직 이전과 이후의 임금 분포 변화와 이직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임금 분포를 보면, 이직을 하지 않은 청년들의 분포가 더 높은 임금을 나타내지만, 이직을 통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중소기업정책금융 평가 예시: 기업단위 총변화와 산업단위 순변화의 비교

1. 정책금융, 기업단위 취득 변화 평가(2011~2015년)

본 장에서는 먼저 개별 기업단위에 있어 정책금융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책평가 사례 예시는 정책금융이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현재의 일자리 정책평가가 경제 전체나 산업의 고용 순변화보다는 개별 기업의 고용 총변화를 주된 성과지표

피보험자의
단순 취득에서는
정책금융 지원이
지원기업의 취득을
0.57명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청년
취득은 오히려 0.05명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 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과지표 기준으로 정책평가를 수행해 보
기 위함이다. 방법론으로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성과지표로는 단
순 취득, 청년 취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취득(양질의 일자리는 물가조정 월평균
보수액 200만원 이상으로 정의함)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의 기업 변동 특성과 기업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를
설명변수로 고려한 상황에서 해당 기의 정책금융 지원 여부가 성과지표인 피설
명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y_{i,t} = \alpha + P_{i,t}\beta + x_{i,t-1}\gamma + \nu_i + v_t + \epsilon_{i,t}$$

$P_{i,t}$: 기업 i 에 대한 t 연도의 정책금융 지원 여부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단순 취득에서는 정책금융 지
원이 지원기업의 취득을 0.57명 유의하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취득의
경우에는 0.11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10% 수준이어서
유의도가 높지 않으며, 양질의 청년 취득은 오히려 정책금융 지원이 0.05명 유의
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에 있어서는 성과지표에 따라 정책금융
이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순한 취득의 증가가 청년 취득이나 양질의 취득
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정량적 사
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2011~2015년 정책금융 효과 분석(기업단위 고정효과모형)

피보험자 취득 분류별	피보험자 취득		청년 취득		청년 양질 취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정책금융 지원 여부	0.570***	0.00	0.112*	0.09	-0.052***	0.00
전기 매출액	-0.000***	0.00	-0.000	0.48	0.000***	0.00
전기 총자산	0.000***	0.00	0.000***	0.00	0.000***	0.00
전기 영업이익	0.000***	0.00	0.000***	0.00	0.000***	0.00
전기 업력	0.270	0.59	0.173	0.50	0.035	0.50
전기 총자산영업이익률	0.002	0.31	0.000	0.73	-0.000	0.57
전기 청년 상실	0.231***	0.00	0.198***	0.00	0.007***	0.00
전기 장년 상실	-0.052***	0.00	-0.052***	0.00	0.001***	0.00

<표 7>의 계속

피보험자 취득 분류별	피보험자 취득		청년 취득		청년 양질 취득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전기 산업중소기업 평균 총자산	-0.000***	0.00	0.000**	0.01	0.000	0.13
전기 산업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0.000	0.18	0.000	0.44	-0.000	0.48
전기 산업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	0.001	0.30	0.000	0.27	-0.000	0.93
전기 산업중소기업 평균 연구개발비	-0.000	0.86	-0.001**	0.03	0.000***	0.00
전기 산업중소기업 평균 업력	-0.036	0.78	-0.085	0.21	-0.024*	0.08
전기 산업중소기업 평균 총자산 영업이익률	0.011	0.64	0.020	0.11	0.004*	0.09
2013년	-0.555	0.27	-0.345	0.19	-0.013	0.80
2014년	-1.023	0.30	-0.546	0.29	-0.011	0.91
2015년	-1.052	0.48	-0.675	0.38	0.034	0.83
상수값	9.612**	0.02	1.498	0.49	-0.093	0.83
Sigma_u	36.43		15.98		1.84	
Sigma_e	15.45		8.05		1.63	
Rho	0.85		0.80		0.56	
관측수	543,571		543,571		543,571	
그룹수	229,173		229,173		229,173	

주: 1. 구축한 DB로부터 저자가 직접 추정한 결과임.

2. 유의도는 1% 이내에서 ***, 5% 이내에서 **, 10% 이내에서 *로 표시함

출처: 저자 작성

2. 정책금융, 소분류 산업단위 일자리 순증감 평가(2011~2015년)

그다음으로 산업단위의 정책평가를 수행해 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자리의 단순 창출과 상실은 일자리의 순증감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소분류 산업단위 기준으로 볼 때 구축한 2010~2015년 기간 내 일자리의 수는, 비록 구성은 바뀌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재정 정책이 산업단위의 일자리 순증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비록

결과에 있어서는 성과지표에 따라 정책금융이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순한 취득의 증가가 청년 취득이나 양질의 취득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순수 일자리의 증가는
일자리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지원받은 개별 기업단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전체 산업의 순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일자리 수 기준에서는 일자리의 단순 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원받은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창출된 일자리가 양질이라면 정책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을 보조금이나 융자 또는 대출형태로 지원받은 기업의 생산성은 일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⁴⁾ 따라서 순수 일자리의 증가는 일자리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9차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론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산업 일자리 순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산업은 기업과 달리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짝짓기나 회귀분석 등 특성을 통제하여 유사 대조군을 형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산업과 연도의 고정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패널모형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료의 패널 구조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패널모형과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여 각 산업에 제공된 정책금융의 규모가 산업 피보험자 수 증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추정식은 앞선 절의 고정효과 모형과 유사하지만, 관찰단위가 산업이고 통제변수도 산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금융이 지원 여부가 아니고 지원금액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다르다.

$$y_{i,t} = \alpha + P_{i,t}\beta + x_{i,t-1}\gamma + \nu_i + \nu_t + \epsilon_{i,t}$$

$P_{i,t}$: 산업 i 에 대한 t 연도의 정책금융 지원금액

<표 8>은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¹⁵⁾을 성과지표로 하여 정책금융의 효과를 고정효과패널모형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산업에 지원된 정책금융 지원금액은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업종별, 연도별 고정효과를 고려하고도 전기 산업별 총자산이나 매출액, 영업이익의 규모는 산업별 순수 피보험자 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금융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14) 기존의 다양한 연구와, 본 자료를 활용한 장우현·강희우(2018)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5) 본 분석에서 순증감은 각 연도의 개별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해당 연간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의 차이 합계로 정의하며, 이는 산업의 순수 고용창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지표이다.

<표 8> 정책금융의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 영향 분석: 고정효과패널모형

종속변수: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산업당 정책금융 지원금액	-0.000	0.002	0.04	0.97
전기 산업별 순수 피보험자 수	-0.146***	0.021	7.04	0.00
전기 산업당 총자산	0.000***	0.000	3.24	0.00
전기 산업당 매출액	-0.000**	0.000	2.33	0.02
전기 산업당 영업이익	0.000***	0.000	3.41	0.00
전기 산업당 연구개발비	-0.001***	0.000	3.82	0.00
전기 산업별 기업 수	0.818**	0.370	2.21	0.03
전기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43.021	59.139	0.73	0.47
전기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매출액 기준	-26.763	17.774	1.51	0.13
전기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총자산 기준	15.366	19.604	0.78	0.43
전기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연구개발비 기준	2.538	7.264	0.35	0.73
전기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피보험자 수 기준	39.428	29.047	1.36	0.18
2013년	151.139	193.114	0.78	0.434
2014년	64.604	208.930	0.31	0.757
2015년	165.173	219.053	0.75	0.451

sigma_u = 9617.38

sigma_e = 1757.5116

rho = 0.96768409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관측치: 742, 그룹 수: 193

주: 1. 구축한 DB로부터 저자가 직접 추정한 결과임.

2. 유의도는 1% 이내에서 ***, 5% 이내에서 **, 10% 이내에서 *로 표시함

출처: 저자 작성

고정효과 패널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의 전기 자료들을 설명변수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동적패널 추정 방법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표 9>는 Arellano-Bond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동적패널 추정을 수행한 결과로, 역시 정책금융의 규모는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책금융의 규모는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현황 분석 결과, 일자리 생태계는 정책당국과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효율화를 통한 동태적 변화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정책금융의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 영향 분석: Arellano-Bond Estimator

종속변수: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전기 산업별 피보험자 순증감	0.016	0.039	0.40	0.69
전기 산업당 정책금융 지원금액	-0.001	0.003	-0.48	0.63
전기 산업당 총자산영업이익률	-29.978	47.853	-0.63	0.53
전기 산업별순수피보험자 수	-0.212***	0.019	-11.16	0.00
전기 산업당 총자산	0.000***	0.000	3.88	0.00
전기 산업당 매출액	-0.000	0.000	-1.33	0.18
전기 산업당 영업이익	0.000**	0.000	2.73	0.01
전기 산업당 연구개발비	-0.001***	0.000	-4.10	0.00
전기 산업별 기업수	1.678***	0.330	5.08	0.00
전기 산업별 중소기업 비중 _연구개발비 기준	-1.405	7.161	-0.20	0.84

관측치: 543, 그룹수: 184, 도구변수: 15개

주: 1. 구축한 DB로부터 저자가 직접 추정한 결과임.
 2. 유의도는 1% 이내에서 ***, 5% 이내에서 **, 10% 이내에서 *로 표시함
 출처: 저자 작성

IV. 정책 제언

이상의 논의로부터 일자리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제언은 일자리 재정사업의 효과성 최대화를 위한 필요충분한 제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자리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언들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일자리 재정정책 성과지표 재정립

일자리 창출현황 분석 결과, 일자리 생태계는 정책당국과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효율화를 통한 동태적 변화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료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제외한 30만

개 주요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1년간 전체 피보험자 중 40%가 넘는 피보험자들이 이직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직 후 월평균 보수금액이 상승하는 경우가 이직 전후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60~70%에 달하여, 우리 경제의 경우 일자리의 재구성을 통한 경제 효율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모든 일자리의 창출과 상실이 정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정교한 정책평가 환류체계를 갖추지 않고 단순한 현존 일자리 창출 및 상실에 개입할 경우 경제의 효율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도 함께 시사한다.

이처럼 실제 우리 일자리 생태계는 미국의 지표에 비견될 정도로 역동적이며 이동성도 높고 그 수혜를 이직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거와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총변화 차원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상실 예방, 그리고 일자리의 지속을 목표로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가 보여주는 장점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일자리 재정정책의 집행과 반응을 돌이켜 보면, 정책당국의 곤혹스러움이 느껴진다. 실제 재정을 전례 없는 규모로 동원하여 개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의 상실을 저지해냈고 그 실적은 확인되는데, 왜 경제 전체의 일자리 증분이 낮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충분한 당혹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경제적 평가의 경우 양적인 측면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자리 순증감으로 측정된다는 사실, 그러나 많은 경우 일자리 재정정책들의 개별 성과지표는 일자리의 총증감에 맞춰져 있고 우리 일자리 생태계의 특성상 경제 내 대부분의 일자리 총증감은 일자리 순증감과 높은 연관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일자리 상실의 저지가 오히려 일자리 순증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실증적 사실을 간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재정정책의 양적 성과지표를 중간단계에서도 명확히 순증감에 맞출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개별 산업단위, 경제 전체의 일자리 순증감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본고 제III장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금융의 경우 개별 기업단위의 고용보험 취득자에서는 고용증가효과가 확인되지만, 고정효과 패널 모형 및 동적패널 모형을 활용한 산업단위 정책 분석 결과, 해당 지원이 산업단위의 고용창출능

**개별 기업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개별
산업단위, 경제 전체의
일자리 순증감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 재정정책의
성과지표를 일자리의
순증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하게 되면,
일자리의 순증과 양질의
창출에 기여하되
시장실패가 있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자리 정책의
대상을 좁혀 접근할 수
있다.**

력을 추가적으로 늘린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어, 산업단위의 고용조정에 있어 재정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정책의 설계와 평가에 있어서는 산업단위 일자리 순증감에 관한 정책 평가와 평가 결과 환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성과지표 재정립에 따른 정책 조준의 개선

일자리 재정정책의 성과지표를 일자리의 순증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하게 되면, 일자리의 순증과 양질의 창출에 기여하되 시장실패가 있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자리 정책의 대상을 좁혀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경제에서 현재 순수 증가에 기여하는 일자리는 주로 창업기 기업들, 특히 창업기 중소기업들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업기 기업과 중소기업 조건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개연성도 함께 갖춘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책 재배분에 있어 다른 대상에 대한 지원보다 우선하여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나 양질의 청년 일자리 등 세부 정책목표 차원에서 볼 때 개별 산업분류에 따라 그 창출능력의 차이가 확인되는바, 해당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산업 간 배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집중하여 조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성과지표에 비추어볼 때 기여도가 낮고 시장실패의 가능성도 낮은 영역은,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는 조준을 지양하고 그 지출 규모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장실패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가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가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의 발생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의해 오히려 정책이 성과지표를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관리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논리적 개연성이 없는 정책 조준은 그 자체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책 조준 측면의 개선은 정책 성과 달성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정확한 일자리 정보의 가공과 제공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부분은 분석 결과, 실제 일자리 생태계의 모습과 일

반의 인식 간 괴리가 확인되며 이는 국민들이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문제인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흔히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해서 대기업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자료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있고, 취업 후 이직 빈도는 실제 높으며 이직을 하면 평균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자료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일반의 인식은 이와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실제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평생 직장’이 존재하며 이를 첫 취업 단계에서 찾아야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서로에게 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다양한 일자리에서 건전한 경력을 쌓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불행감과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은,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정부가 정보 제공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예시를 검토해보자. 만일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면 어떤 기업에 취업해야 더 나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일자리를 찾는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만일 가능할 경우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면, 어떤 산업, 어떤 특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으면 그 경력을 디딤돌로 삼아 보다 쉽게 대기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는가? 이와 같은 정보들은 본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8년 현재 이미 상당 부분 존재하며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경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평가 결과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양한 재정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수십조원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산출과 소통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KIPF**

**재정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산출과 소통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7.
- 장우현, 「중소기업 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개발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2014.
- _____, 『창업기업 금융지원의 성과평가와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6a.
- _____,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중소기업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소기업분과위원회, 2016b.
- _____, 『산업구조변화 추이분석(1990~2014)과 산업고도화 접근방향』, Working Paper, 2017.
- 장우현 (편),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연구보고서 2014-10,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장우현·강희우, 『일자리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개발연구원, 2013a.
- 장우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5.
- 통계청,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7.
-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자: 2018. 7. 17.
- JOLTS, <https://www.bls.gov/news.release/jolts.t16.htm>, 검색일자: 2018. 7. 31.



「제6회 현안분석 우수 원고상」 선정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적인 정기 간행물로서, 해마다 조세·재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분석을 제시하는 현안분석 섹션 원고들을 대상으로 우수원고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6회를 맞는 본 「현안분석 우수 원고상」은 『재정포럼』 2017년 12월호~2018년 11월호에 게재된 총 25편의 현안분석 원고 중 주제의 시의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독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유익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포럼』 편집위원과 전 연구위원의 참여로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2편의 우수원고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회 현안분석 우수 원고 선정 결과

현안분석 원고 제목	저자	게재월호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에 관한 소고	신상화	2018년 3월호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시사점: 경쟁 및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김빛마로	2018년 7월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이번 호 「재정동향」은 쉽니다.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18년 11월 20일 ‘자진신고제도(new voluntary disclosur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¹⁾

- 2018년 9월 28일자로 기존의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이 종료됨에 따라²⁾ 이후 발생하는 자진신고분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것임
-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2018년 9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신고분부터 적용됨

*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 납세자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자의 민사상 가산세 및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임

■ 자진신고제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과 기존의 미신고 소득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actice: VDP)를 통합하여 동일한 절차, 가산세제도를 적용함³⁾

- 기존의 미신고 소득 자진신고제도(VDP)는 구체적인 진행 절차 및 가산세제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국세청 내부지침에 따라 자진신고를 처리함
-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은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프로그램 종료로 기존의 미신고 소득 자진신고제도의 진행 절차와 통합한 새로운 절차를 명시함
- 따라서 국내 및 해외 미신고 소득이 있거나 해외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동일한 절차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됨

■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진신고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⁴⁾

- 납세자는 미 국세청의 범칙조사부서(Criminal Investigation)에 자진신고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미 국세청 범칙조사부서는 모든 사전신청을 전수 검토함

1) Taxnotes, Revised Voluntary Disclosure Rules Extend Penalty Framework, 2018. 12. 3.

2) 최근 해외재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 참여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납세자의 해외재산 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임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losing-the-2014-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frequently-asked-questions-and-answers>, 검색일자: 2018. 12. 20.

3) Capline & drysdale, <http://www.capdale.com/the-new-voluntary-disclosure-practice-a-fair-compromise>, 검색일자: 2018. 12. 20.

4)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offshore-voluntary-disclosure-program>, 검색일자: 2018. 12. 20.

- 미 국세청 범칙조사부서가 사전신청을 승인하면 납세자는 Form 14457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형사상 소추 면제 또는 가산세 경감을 심사하는 심사부서(civil examiner)에 전달됨
- 심사부서는 표준조사 절차(standard examination procedures)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미납세금, 이자, 가산세를 결정함
- 납세자는 혐의된 사항을 신속, 완전히 이행해야 함
 - 만약 납세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조사부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미신고 소득 및 해외재산 신고 시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규정(civil resolution framework)을 도입하였으며, 과세당국의 자진신고 담당자는 아래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결정함

-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세금납부액이 가장 큰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1개 연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함
 -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1개 연도 이상(최대 6개 연도까지)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 가산세(IRC §6663)⁵⁾, 무신고 가산세(IRC § 6651(f))⁶⁾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함

-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 국세청 실무지침(Internal Revenue Manual: IRM) 4.26.16 및 4.26.17에 따라 10만 달러 또는 신고의무 위반시점 계좌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함

■ 또한 자진신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가산세 등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이전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납세자가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에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존재함⁷⁾
-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스웨덴 - 2019 예산안 발표]

■ 스웨덴 정부는 2019 예산안(Budget for 2019)을 2018년 11월 15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음⁸⁾

- 의회는 2018년 12월 12일자로 전반적인 예산안 체계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향후 세부적인 수정을 거쳐 표결에 들어갈 예정임

5) 과소납부세액의 75%를 가산세로 부과함

6) 납세자가 사기(fraud)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해야 할 세액의 5%를 매달 부과하며, 신고해야 할 세액의 75%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함

7) Taxnotes, Revised Voluntary Disclosure Rules Extend Penalty Framework, 2018. 12. 3.

8)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2-13_se_1.html, 검색일자: 2018. 12. 19.



- 대규모 세계개편안보다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일부 요율 변경 등 기술적인 수정사항들을 포함함
- (법인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지급율을 조정함
- 현행 스웨덴 법인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총 31.42%에 달하는 사회보장부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하며, 그 세부 항목별 요율은 <표 1>과 같음

<표 1> 사회보장부담금 세부 항목별 요율

(단위: %)

구분	항목	부담률
(1)	퇴직연금보험(retirement pension insurance)	10.21
(2)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4.35
(3)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2.64
(4)	유족연금보험(survivor's pension insurance)	0.7
(5)	자녀양육보험(parentthood insurance)	2.6
(6)	산재보험(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0.2
(7)	일반급여세(general salary tax)	10.72
	합계	31.42

자료: IBFD, Sweden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4. Taxes on Payroll, November 1, 2018.

-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 및 유족연금보험에 대한 법인 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일부 인하 또는 인상함
 - 건강보험: 현행 4.35%에서 3.55%로 인하
 - 유족연금보험: 현행 0.7%에서 0.6%로 인하

- 일반급여세: 현행 10.72%에서 11.62%로 인상

- (개인소득세) 특정 계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경감 및 자영업자의 사회보장부담금 요율 개정 등의 사항을 포함함

-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소득금액이 스웨덴크로네 20만 7천 이상 117만 7천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 기본소득공제 금액을 일부 인상함으로써 해당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예정임
-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중 일반급여세(general salary tax) 항목에 대한 부담률을 일부 인상함
 - 현행 10.72%에서 11.62%로 인상
-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 중 건강보험, 유족연금보험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하함
 - 건강보험: 현행 4.44%에서 3.64%로 인하
 - 유족연금보험: 현행 0.7%에서 0.6%로 인하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스위스 - OECD Global Forum의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 초안 채택]

- 스위스 의회는 2018년 11월 21일 OECD의 '과세 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포럼(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s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⁹⁾의 권고사항에 따른 개정안 초안(dispatch)을 채택함¹⁰⁾

9) OECD의 글로벌 포럼은 현재 15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해야 하고 회원국 간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함. OECD, <http://www.oecd.org/tax/transparency>, 검색일자: 2018. 12. 24.

10)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adopts dispatch on implementation of Global Forum's recommendations(26 Nov. 2018), News IBFD.

- 2016년 7월 26일 스위스의 과세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 기준 이행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며, 스위스 기업의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스위스 재무부는 2018년 1월 OECD 글로벌 포럼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통과된 개정사항으로 ①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registered shares) 또는 거래소 등록주식(intermediated shares)으로 전환, ② 주식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의 기록 및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¹¹⁾
-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만 무기명주식의 발행을 허용함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스위스의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상 보고의무에 의해 기업주식 소유주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됨
 - 기존에는 비상장기업의 무기명주식 발행이 가능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비상장기업의 무기명주식 발행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 주식의 실질적 수익자 미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과태료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최대 1만프랑(약 1,100만원)을 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
- 스위스 재무부는 2019년 봄부터 세법개정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무기명주식을 기명주식 또는 거래소 등록주식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임¹²⁾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폴란드 - BEPS Action 5, 12의 권고사항 최종 입법]**
- 폴란드 대통령은 BEPS Action 5, 12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함¹³⁾
 - 폴란드 재무부는 2018년 8월 24일 Action 5의 권고사항인 연계접근법을 적용한 지적재산권 제도 도입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폴란드 상원은 2018년 10월 26일 Action 12의 권고사항인 의무보고 규정 도입안을 승인한 바 있음

11) 개정안 초안의 내용은 CMS Law-Now에서 2018년 3월 7일 발표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CMS Law-Now, <http://www.cms-lawnow.com/ealerts/2018/03/farewell-to-bearer-shares-and-introduction-of-criminal-sanctions>, 검색일자: 2018. 12. 24.

12) 스위스 재무부,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73051.html>, 검색일자: 2018. 12. 24.

13) Poland - President signs law introducing 2019 tax package(22 Nov. 2018), News IBFD.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3-december-2018>



● 이번에는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최종 규정으로 입법된 것임

- 폴란드는 지적재산권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보유 및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5%의 우대세율을 과세하며, Action 5 권고사항에 따라 실질적 R&D활동과 관련된 이익에만 우대세율을 적용함
- 즉, 총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에서 적격지출액¹⁴⁾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실질적 R&D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함

- Action 12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중 잠재적으로 조세회피 위험이 있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대리인이 해당 거래를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함
- 보고 대상 거래는 EU지침에 따르며, 폴란드는 국내거래도 보고 대상에 포함하여 EU지침보다 보고 범위를 넓게 규정함¹⁵⁾

■ 2개 개정사항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핀란드 - 유한책임회사 과세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 핀란드 정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 대한 과세 개정안을 2018년 11월 29일자로 발표함¹⁶⁾

- LLC 관련 과세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하고 자본 손실 및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현행 세법상 LLC의 경우 다른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종류별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이월결손금 통산 등에 제약을 받음

- 현행 핀란드 세법상 법인의 소득은 ‘사업활동소득’, ‘농업소득’, ‘기타소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됨
 - 상기 모든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로 동일함
 - 다만, 사업활동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법(Business Income Tax Act)」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소득, 임대소득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세부 과세내용이 결정됨

14) 적격지출액은 본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외부에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아웃소싱 비용을 합한 금액이며, 지적재산권 취득원가는 제외됨. 지적재산권 취득원가는 총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취득으로 발생한 이익에는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발생한 이익에만 우대세율이 적용됨

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0호」 2018 참조

16) Deloitte, https://www.taxathand.com/article/10748/Finland/2018/Corporate-income-tax-proposals-would-affect-LLCs-group-contribution-regime?id=gx:2em:3na:4wta_2018_12_14:5eng:6tax&sfid=70110000002Do2A, 검색일자: 2018. 12. 19.

- 비용 공제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소득 종류 간에 통산은 허용되지 않음
 - 현행 세법상 LLC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세 가지 소득 종류별로 세부 적용 법령이 다르며, 소득 종류 간 손실 통산 또한 제한됨
 -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LLC의 경우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사업소득세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소득으로 취급함
 - 투자소득, 부동산소득 등 ‘기타소득’으로서 기존의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되었던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 다만 당해 LLC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주택 소유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일 경우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LLC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이 허용됨
 - LLC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사업소득세법」으로 일원화되면서 기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투자소득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사업활동소득’에서 통산하여 공제 가능하게 됨
 -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기한은 종전과 같은 10년임
 - 개정안에서는 LLC의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손실을 사업활동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등 사업활동과는 무관한 기타자산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사업활동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다만 경과규정상 향후 5개년 동안 해당 처분 손실은 기타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핀란드 - 투자펀드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 핀란드 정부는 투자펀드(investment fund)에 대한 과세 개정안을 담은 법안(HE 304/2018)을 2018년 12월 13일자로 의회에 제출함¹⁷⁾
 - 투자펀드 관련 현행 법령이 일부 모호한 점이 있어 외국 투자펀드나 해외투자 소득 등에 대한 과세 여부가 명확치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 3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임
- 현행 핀란드 세법상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투자펀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법상 규정이 없음

17) IBFD, 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12-14.fi_1.html&WT.z_nav=Navigation, 검색일자: 2018. 12. 19.



- 투자펀드의 경우 지분 소유자가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투자펀드의 의미에 대해 세법상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내 민사법상 규정을 준용하는 관계로 세법 적용 시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 특히 외국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펀드와 같이 보아 핀란드에서의 원천징수 과세를 면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였음

■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투자자 수 및 펀드 성격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외국 투자펀드도 국내 펀드와 같이 취급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함

- 당해 외국 투자펀드가 당사자들 간 서면계약관계(contractual arrangement)에 기초하여 설립된 것이어야 함
- 펀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최소 30명이상이어야 함
- 해당 투자펀드가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서 개방형 펀드(open-ended)여야 함

■ 만약 외국 투자펀드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당해 외국 투자펀드가 소재 국가 법령상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어야 함
- 해당 펀드 소재 상대방 국가와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실제로 해당 국가로부터 취득할 수 있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중국 -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 적용에 관한 통지 발표¹⁸⁾

■ 중국 국세청은 국무원의 ‘사회적 신의성실 확립과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을 실행하고, 위법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을 제정하여 발표함

■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가 장부 등 세무 증빙서류를 위조, 변조, 은닉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이 100만위안(약 1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¹⁹⁾
- 미납부세액이 있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

18)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14071/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2. 13.

19)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1위안=164원) 환율 적용(2018년 12월 17일)

으로 과세관청의 세금추징을 방해하고, 그 미납 부세액이 10만위안(약 1천 6백만원) 이상인 경우

- 세금계산서를 100장 이상 또는 40만위안(약 6천 6백만원) 이상을 허위 발행한 경우
- 탈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과세관청의 조사 중 도피 등이 확인된 경우

■ 「중대한 세수위법행위 정보 공포법」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주요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성(省) 과세관청 홈페이지와 공유하도록 함

- 납세자 번호, 이름, 성별, 신분증 번호
- 법인의 경우 해당 명칭,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 주소지, 법정대표인 등
- 주요 위법 사실, 세무처리 및 처벌 등 상황 등

■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 - 해외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상향 조정²⁰⁾]

■ 중국 국세청은 관세의 경우 '0'세율 적용 및 수입 증치세, 소비세 경감 혜택이 적용되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함

- 단일 거래 1건당 금액 한도는 현행 2천위안(약 33만원)에서 5천위안(약 8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연간 거래금액 한도는 현재 2만위안에서 2만 6천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함

- 관세 포함 가격이 단일거래 한도금액인 5천 위안을 초과하지만, 연간 한도금액인 2만 6천 위안보다는 낮고 단 1개의 상품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창구에서 수입할 수 있음

●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별 한도 내에서 관세의 경우 '0'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증치세와 소비세는 법정납부세액의 70%를 부과함²¹⁾

■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매 수입제품이 허용되는 시범지역이 기존 15개에서 22개로 확대됨²²⁾

- 상하이, 톈진, 항저우, 광저우 등 기존 15개 지역에서 베이징, 난징, 우한, 시안, 샤먼, 선양 7개 도시를 추가하여 22개 도시에 적용하기로 함

■ 소비수요가 높아진 스파클링 와인, 맥아맥주, 피트니스 장비 등 63개 상품을 추가하여 소매수입 목록은 총 1,321개로 확대되었음²³⁾

■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20)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29562/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2. 14.

21) 해외 전자상거래 한도금액에 따른 세제혜택은 2016년 4월 8일 이후 시행되고 있음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044092/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2. 24.

22) 국무원, http://www.gov.cn/guowuyuan/2018-11/21/content_5342252.html, 검색일자: 2018. 12. 24.

23)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3929521/content.html>, 검색일자: 2018. 12. 21.



[뉴질랜드 - 역외 사업자 부가가치세 등록의무 부여에 대한 법안 발표]

■ 뉴질랜드 의회는 12월 5일 온라인 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간 6만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매출이 있는 역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GST)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함²⁴⁾

- 1천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재화거래에 해당되며, 역외 사업자는 비거주자로 재화는 공급 당시 뉴질랜드 역외에서 제공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은 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1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동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OECD - G20 정상회의를 위한 국제조세보고서 발간]

■ OECD는 2018년 11월 30일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를 위한 국제조세보고서(OECD Secretary-General Report to G20 Leaders)를 발간함²⁵⁾

- 동 보고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OECD 국제조세 관련 주요 안전사항들에 대

한 진행사항을, 제2부에서는 조세투명성과 과세 목적 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한 글로벌포럼 논의 내용을 다룸

■ 제1부에서는 OECD 국제조세 주요 현안인 BEPS 프로젝트, 조세투명성 기준, 개발도상국 과세행정 역량 강화, 조세확실성에 대한 경과사항을 보고함

■ BEPS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최소 기준(Action 5, 6, 13, 14)에 대해 참여국 간 첫 번째 상호검토(peer reviews) 결과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디지털경제하의 조세문제에 대한 장기 해결책을 2020년에 제시할 예정이라 밝힘

- 포괄적 이행체제의 참여국은 124개국으로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Action5)과 관련된 상호검토 결과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재까지 243개 조세특례제도가 검토되었으며, 134개 조세제도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개정 또는 폐지 절차가 진행 중임²⁶⁾
 - 과세 행정에 대한 투명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1만 6천건 이상의 예규가 정보교환 대상으로 확인되었고 교환이 진행 중임
- 조세조약남용²⁷⁾ 방지(Action 6)와 관련해서는 현재 첫 번째 상호검토가 진행 중이며, 곧 결과

24) 뉴질랜드 의회, <http://taxpolicy.ird.govt.nz>, 검색일자: 2018. 12. 17.

25) OECD, <https://www.oecd.org/g20/summits/buenos-aires/oecd-secretary-general-tax-report-g20-leaders-argentina-dec-2018.pdf>, 검색일자: 2018. 12. 14.

26) 이로 인해 하나의 IP제도를 제외한 모든 IP제도가 BEPS 최소 기준을 충족하였음

27) 조세조약남용이란 특정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는 납세자가 해당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거주지나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조세조약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약소피가 대표적인 조약남용의 형태임. 홍성훈·정훈·홍민욱,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 pp. 3~4.

가 발표될 예정임

- 2018년 7월 1일부로 다자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통해 1,400개 조세조약이 수정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별 보고서(Action13) 관련 상호검토 결과사항은 다음과 같음

- BEPS 참여국의 관련 입법 여부를 검토하는 제1차 상호검토가 9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체계 적절성을 검토하는 제2차 상호검토 결과물은 2019년 중에 발표될 예정임

- 올해 6월 첫 번째 국가별 보고서 교환이 이루어졌음

- 조세투명성 기준이 이행됨에 따라 930억 유로(한화 약 120조) 추가 과세수입이 확인되었으며, 수천억유로의 가치가 있는 계좌정보가 2017년에 교환되었음

- 이전 2018년 7월 G20 재무장관에 대한 조세보고서에서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에 대해 강화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비협조국 명단 등 각국의 경과를 담은 보고서를 2019년 중 발표할 예정임

- 조세투명성 기준으로는 특정정보교환(EOIR), 자

동정보교환(AEOI), 다자협약에 참여하거나 위 두 기준을 허용하는 교환네트워크 실행이 있음

- 자동정보교환(AEOI)²⁸⁾과 관련하여 83개 국가가 정보교환을 실시하였으며, 15개 비협조국에 대해 추가 조치사항을 제시함

- 현재 특정정보교환(EOIR) 기준과 관련하여 글로벌포럼의 2차 상호검토가 진행 중이며, 포럼 참여 국가의 90% 이상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이 필요한 국가는 6개국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는 2019년도 상반기에 제2차 상호평가 실시 예정²⁹⁾

- OECD는 과세협력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PCT)과 국경 없는 세무감시반(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을 통해 개발도상국가의 과세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음

-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업무 진행상황을 보고함

- 2017년 금융계좌의 자동정보교환제도가 폭넓게 시행됨에 따라 2018년에 80개 국가가 비거주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교환하였음

28) 자동정보교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일체의 입법이 완료되고 2018년 말까지 정보의 교환이 시작되어야 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7호」, 2018.

29) 주오이디시대한민국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9/view.do?seq=1343847&srchFr=&srchTo=&srchWord=조세정보&srchTp=0&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자: 2018. 12. 21.



- 2017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49개 국가가 자동정보교환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51개 국가가 시행하였음

- 특정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정보교환제도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추가자료, 국가별 보고서 및 조세예규 등의 교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특정정보교환제도와 관련하여 2차 상호검토가 실시 중이며³⁰⁾, 특정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접근(access to), 실질소유권 정보 등을 확보하고자 함
- 현재 글로벌 포럼 회원국은 154개국으로 작년 대비 12개 개발도상국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기술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현재까지 조세문제에 대한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다자협약³¹⁾에 서명한 국가는 126개국으로, 앞으로는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통해 동 프로젝트를 진척시켜 나가고자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OECD - 2018 소비세 동향 보고서(Consumption Tax Trends 2018) 발표]

■ OECD는 2018년 12월 5일 2018년 소비세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였음³²⁾

● 2년마다 출판되는 보고서로 OECD 회원국의 소비세 관련 국가 간 비교자료와 정책동향에 대한 내용을 담음

● 소비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일반 소비세인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등)와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별소비세(excise tax)로 나뉨

■ 2016년 OECD 회원국의 소비세는 총세수입의 30.6%과 GDP의 10.3%로 1975년 이래로 세수의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일반소비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면에 개별소비세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임³³⁾

● 총세수입 비중: 일반소비세는 1975년 13.4% 이래로 2016년 20.8%로 증가하였으며, 개별소비세는 1975년 17.7%에서 2016년 9.8%로 감소하였음

● GDP 비중: 일반소비세는 1975년 4.1% 이래로 2016년 7.0%로 증가하였으며, 개별소비세는 1975년 4.6%에서 2016년 3.3%로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소비세는 총세수입의 26.4% 와 GDP의 6.9%를 차지함

-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1975년 자료³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한 모습임

30) 특정정보교환제도 2차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기준으로 약 40개 국가가 평가를 완료하였음

31) The 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

32) OECD,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consumption-tax-trends-2018_ctt-2018-en;jsessionid=1Z--c6vA6jhxerAjbOzdTADi.ip-10-240-5-60, 검색일자: 2018. 12. 14.

33) 대략적으로 소비세 총과세수입 중 2/3는 일반소비세이며, 나머지 1/3은 개별소비세가 차지함

34) 총세수입의 60%, GDP의 8.9% 차지

<표 2> 2016년 OECD 회원국의 소비세 비중

(단위: %)

구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1975	2005	2010	2015	2016	1975	2005	2010	2015	2016
호주	6.6	7.6	6.5	6.6	6.4	25.8	25.4	25.7	23.8	23.2
오스트리아	12.3	11.0	10.7	10.8	10.9	33.9	26.8	26.2	25.1	25.9
벨기에	10.1	10.1	10.1	10.1	10.2	26.0	23.3	23.8	22.5	23.2
캐나다	8.1	7.8	7.0	7.0	7.1	26.0	23.7	22.5	21.5	21.8
칠레	..	10.1	9.4	10.3	10.3	..	48.7	48.2	50.8	51.1
체코	..	10.0	10.1	10.6	10.8	..	29.0	31.2	31.8	31.4
덴마크	12.0	15.1	13.8	13.3	13.6	32.6	31.4	30.8	28.8	29.5
에스토니아	..	12.0	13.0	13.5	13.9	..	40.0	39.1	40.6	41.3
핀란드	11.4	12.9	12.6	13.7	13.9	31.6	30.6	30.8	31.2	31.5
프랑스	11.3	10.6	10.2	10.7	10.8	32.4	24.8	24.1	23.5	23.7
독일	8.7	9.5	10.0	9.7	9.5	25.4	27.9	28.4	26.1	25.5
그리스	7.9	9.9	11.2	12.1	13.3	42.2	31.9	34.9	33.0	34.2
헝가리	..	14.2	15.6	16.6	16.2	..	38.8	41.8	42.9	41.3
아이슬란드	18.6	15.0	11.0	11.2	11.3	62.2	37.8	33.1	30.8	21.9
아일랜드	12.4	10.6	9.0	6.8	6.9	44.4	36.2	33.3	29.4	29.7
이스라엘	..	11.1	11.2	11.0	11.0	..	32.8	36.5	35.2	35.2
이탈리아	6.9	9.3	9.9	10.4	10.5	28.3	23.8	23.6	24.2	24.7
일본	3.0	4.5	4.4	6.0	5.8	15.1	17.2	16.7	19.5	18.9
한국	8.9	7.5	7.6	6.6	6.9	60.0	33.3	32.6	26.2	26.4
라트비아	..	11.2	10.6	11.5	12.1	..	39.9	37.7	39.2	39.7
리투아니아	..	10.7	11.2	11.2	11.3	..	36.5	39.7	38.6	37.8
룩셈부르크	6.5	10.7	10.0	9.3	9.4	20.6	28.4	26.8	25.2	24.8
멕시코	..	4.2	4.7	6.0	6.3	..	37.1	36.7	37.9	38.1
네덜란드	8.5	10.0	9.8	9.7	10.1	22.5	28.6	27.4	26.3	26.3
뉴질랜드	6.8	10.8	11.2	11.5	11.3	22.8	30.0	37.1	36.3	35.7
노르웨이	14.2	11.1	11.0	11.0	11.5	36.6	26.1	26.2	28.6	29.7
폴란드	..	12.1	12.1	11.2	11.7	..	36.8	38.6	34.6	35.1
포르투갈	7.6	13.2	11.8	12.7	12.9	40.1	42.7	38.8	36.9	37.7
슬로바키아	..	11.4	9.3	9.9	9.8	..	36.5	33.0	30.9	30.3
슬로베니아	..	12.5	13.2	13.6	13.4	..	33.1	35.7	37.4	36.8
스페인	4.3	9.1	7.7	9.2	9.0	24.0	25.8	24.7	27.3	27.2
스웨덴	8.8	11.8	12.2	11.7	11.9	22.7	25.3	28.2	27.1	27.0
스위스	4.6	5.4	5.3	5.1	5.1	20.6	20.3	19.9	18.7	18.4
터키	4.8	11.1	11.4	10.7	10.6	40.9	47.4	45.8	42.7	42.1
영국	8.1	9.4	9.5	10.2	10.2	23.7	28.8	29.4	31.8	31.1
미국	4.2	3.8	3.6	3.8	3.7	17.1	14.8	15.4	14.4	14.4
OECD 산술평균 ¹⁾	8.7	10.2	9.9	10.1	10.3	31.1	31.2	31.2	30.6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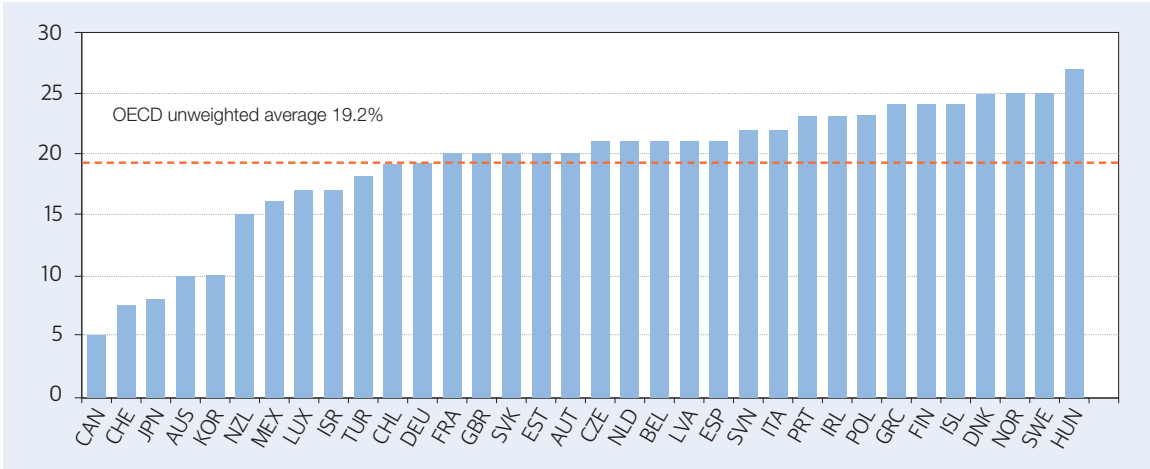
주: 1) 2016년도 OECD 평균수치 계산 시 아이슬란드의 특정 일회성 수익을 제외

출처: Revenue Statistics 2018,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s://doi.org/10.1787/rev_stats-2018-en



[그림 1] 2018년도 OECD 회원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

(단위: %)



출처: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8, pp. 46.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2%임

- 미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은 모두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일하게 판매세(retail sales tax)제도를 채택함
-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22%를 초과하는 국가는 10개국이며, EU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1.8%로 OECD 평균을 상회함
- 우리나라 표준부가가치세율은 10%로 캐나다,³⁵⁾ 칠레, 일본 다음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 국가에 속함

■ 많은 OECD 회원국이 소득형평성을 이유로 다수의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였으며, 감면 부가세율 적용 범위도 확대시켰음

- 일반 필수품, 약품류, 의료서비스, 문화 및 스포츠 경기 등³⁶⁾에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함

■ VRR지수(VAT Revenue Ratio)를 통해서 볼 때, 2016년 OECD 평균지수는 0.56으로, 나머지 0.44 비중만큼 징수되지 않은 부가세 수입이 존재함을 시사함

35)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 캐나다 주에서 연방 부가가치세 5% 이외에 별도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

36) 특정 과일, 야채 및 주택 관련 공사, 학교에 납품하는 음식, 레스토랑 서비스, 인터넷 사용료, 유제품류, 돼지고기와 생선류, 전자출판물, 전시 및 농촌개발 공사 용역 등

- VRR이란 잠재적인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실제 부가세 징수금액을 이론상으로 어떠한 감면혜택 없이 계산한 부가세 예상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됨
- 우리나라의 VRR지수는 0.7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일본 다음인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임

■ 또한 많은 OECD 회원국이 국제 VAT/GST 지침과 BEPS Action1 보고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판매와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조치들을 발표하거나 실시하고 있음

- 온라인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소액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조치를 포함함
 - 호주는 2018년 7월 이후 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해 GST를 과세하는 OECD 첫 번째 국가임
 - 뉴질랜드와 EU도 비슷한 법안을 2019년 10월과 2021년 각각 실시하고자 발표함
- 온라인시장 및 기타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자를 대신하여 VAT를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와 신고 절차를 포함함

■ 매입자부가세납부제도(domestic reverse charge), 분할납부제도(split payment mechanism) 등과

같이 부가세 과세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

- 매입자부가세납부제도는 일정 공급에 대해 매입자(소비자)가 스스로 과세 당국에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며, 공급자는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임
- 분할납부제도는 공급자에게 부가세 납부 책임이 존재하나, 공급 대가에서 부가세(혹은 그 일부)는 과세당국 또는 특정 부가세전용계좌로 이체되는 제도임
- OECD 회원국 중 부가세 납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31개국이며,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³⁷⁾를 포함하여 총 5개국임

■ 특별소비세의 세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송용 유류세,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세를 부과 하는 등 점차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됨

- 이번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의 알코올음료, 광유(mineral oil), 담배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중점적으로 다룸
- 담배세와 관련하여 대부분 OECD 회원국의 담배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소비자가격의 50%를 초과하며, 심지어 조세부담률이 80%를 초과하는 국가는 8개국이 존재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37) 우리나라의 '철스크랩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를 말함



[EU - 2021년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 규정 관련 세 부내용 발표]

■ 2018년 12월 11일 EU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VAT 전자상거래 규정(VAT e-commerce package)’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발표하였음³⁸⁾

- 위원회는 주로 온라인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국외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VAT 의무를 간소화하고, 최종회원국 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공급에 대한 VAT가 고객 국가에 정확히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위원회는 2017년 12월 5일 VAT 전자상거래 규정을 채택한 바 있음

■ 현 MOSS제도³⁹⁾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 OSS(One-stop-shop: OSS)제도를 소개하였으며, 확장된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⁴⁰⁾

- 모든 B2C사업(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 관련 사업에 국한하지 않음)
- EU 회원국 간 재화 판매⁴¹⁾
- 최대 150유로의 가치가 있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의 EU 회원국 간 판매

■ 2021년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비거주자 기업이 유럽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부가세 징수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현 규정상 과세가 어려웠던 비거주자가 EU 내에 소재한 저장시설(storage facilities within the EU)을 거쳐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도 이를 과세거래라 명시함

■ 현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EU 각 회원국의 과세당국이 협조하여 기술적인 조치들을 개발 중이며, 상기 제안된 부가세 규정은 각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38) EU,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6732_en.html, 검색일자: 2018. 12. 14.

39) MOSS는 EU 회원국에 통신, 방송,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자국에서 한 번의 온라인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간소화 제도로 2015년에 시행됨

40) EU,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digital-single-market-modernising-vat-cross-border-ecommerce_en, 검색일자: 2018. 12. 14.

41) 특정 유럽연합 국가에서 다른 유럽 국가에 있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 정책흐름 |



-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2018년 11월까지 국세수입 279.9조원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

* 본 자료는 2019년 1월 9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에서 발표한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세계은행(WB)은 1.8.(화) 16:00(미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간 1.9.(수) 06:0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 주요 내용

■ '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방요인(downside risk)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전망('18.6월) 대비 0.1%p 하락한 2.9%로 전망

* 성장률 전망(%), 시장환율 기준: ('18) 3.0 → ('19) 2.9 → ('20) 2.8

** IMF-OECD 등은 PPP환율 기준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며, WB 전망을 PPP 기준으로 환산 시 3.5%

※ 참고: IMF('18.10월) 3.7%, OECD('18.11월) 3.5%

● WB는 국제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약화되고 무역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일부 신흥국들은 금융시장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

● 선진국은 금년 2.0% 성장이 예상되며, 신흥·개도국은 대외수요 둔화, 차입비용 증가, 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라 4.2%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19년 성장률 전망('18.6월→'19.1월, %): (선진국) 2.0→2.0(동일), (신흥·개도국) 4.7→4.2(△0.5%p)

- 특히, 신흥국의 경우 차입비용 증가로 자본유입이 제한되고, 그동안의 부채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며, 무역긴장 고조로 글로벌 성장둔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

■ 지역별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나 6.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은 터키의 금융 불안, 러시아 성장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감소하는 반면,

● 남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은 소비와 투자 개선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19.1월)상 정책제안 요약

- (선진국) 거시정책 완충(buffer) 재건, 개혁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장기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역·이민 정책 자제, 원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체계 구축 노력
-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조치, 부채위험 증가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제고*

* 인적 자본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향상, 무역 자유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참고 1 2019년 1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단위 : %, %p)

구분	2017	2018e	2019f	2020f	2021f	2019f(전망치 비교)		
						'18.6월 (A)	'19.1월 (B)	조정 폭 (B-A)
▪ 경제성장률(시장환율 기준)								
▪ 세계 (PPP환율 기준*)	3.1 (3.7)	3.0 (3.6)	2.9 (3.5)	2.8 (3.6)	2.8 (3.6)	3.0 (3.8)	2.9 (3.5)	△0.1 (△0.3)
○ 선진국	2.3	2.2	2.0	1.6	1.5	2.0	2.0	0.0
- 미국	2.2	2.9	2.5	1.7	1.6	2.5	2.5	0.0
- 유로지역	2.4	1.9	1.6	1.5	1.3	1.7	1.6	△0.1
- 일본	1.9	0.8	0.9	0.7	0.6	0.8	0.9	0.1
○ 신흥국	4.3	4.2	4.2	4.5	4.6	4.7	4.2	△0.5
원자재 수출국	1.7	1.7	2.3	2.9	2.9	3.0	2.3	△0.7
원자재 수입국	6.1	5.8	5.5	5.6	5.6	5.8	5.5	△0.3
(동아시아·태평양)	6.6	6.3	6.0	6.0	5.8	6.1	6.0	△0.1
- 중국	6.9	6.5	6.2	6.2	6.0	6.3	6.2	△0.1
(유럽·중앙아시아)	4.0	3.1	2.3	2.7	2.9	3.1	2.3	△0.8
- 러시아	1.5	1.6	1.5	1.8	1.8	1.8	1.5	△0.3
(중남미)	0.8	0.6	1.7	2.4	2.5	2.3	1.7	△0.6
- 브라질	1.1	1.2	2.2	2.4	2.4	2.5	2.2	△0.3
(중동·북아프리카)	1.2	1.7	1.9	2.7	2.7	3.3	1.9	△1.4
(남아시아)	6.2	6.9	7.1	7.1	7.1	7.1	7.1	0.0
- 인도	6.7	7.3	7.5	7.5	7.5	7.5	7.5	0.0
(사하라 이남)	2.6	2.7	3.4	3.6	3.7	3.5	3.4	△0.1
- 남아공	1.3	0.9	1.3	1.7	1.8	1.8	1.3	△0.5
▪ 국제 무역량 (전년 대비)	5.4	3.8	3.6	3.5	3.4	4.2	3.6	△0.6
▪ 국제 유가 (전년 대비)	23.3	30.7	△2.9	0.0	0.0	△1.4	△2.9	△1.5

* 세계은행은 경제성장률 계산 시, 시장환율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 IMF·OECD 등 여타 기관은 구매력평가(PPP) 기준을 사용(일반적으로 시장환율이 실제 구매력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의 경우, PPP 환율 적용 시 시장환율 적용 시에 비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본 자료는 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만원→210만원 이하)하고, 생산직 근로자 업종 추가
 - * 추가 업종: 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② 아·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③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적용
-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 포함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4/104→6/106)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 기간 2년) 적용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 기산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 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추가
 - *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 장기임대주택의 5호 이상 임대 여부 계산 시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의 호수×지분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시

혁신 성장

-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 추가

*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주식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 기간을 6개월 연장(6개월 이내→1년 이내)

* 재투자 기간 기산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부터 2개월)

-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 비율 준수 시점을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

* 신탁재산 15% 이상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투자금액의 10% 소득 공제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 →500만원으로 확대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3개월→6개월)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

제 허용 범위 확대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부터 6개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까지 매입세액 공제
-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위탁매매 시 위·수탁자 간 매매의 형식(위탁·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 허용
-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도 허용
-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신수를 대회 입상선수(30% 이내)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선수로 확대
-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에서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규제 완화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 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탁주·약주·청주, 전통주 및 소규모 맥주에 허용

-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요금의 10%)인 과세유흥 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공익법인 관리 강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사용→미달 시 증여세 과세

-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지정공익법인 등에서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확대

*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 공시의무

참고 1 시행령 개정안 부문별 요약 및 색인표

부문	주요 내용	찾아보기		
		보도자료1 (요약본)	보도자료2 (상세본)	보도자료3 (문답)
저소득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상향 및 업종 추가	3p	3p	1p
	근로·자녀 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 규정(150만원)	3p	96p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85㎡ 이상+기준시가 3억원 이하 포함)	3p	89p	24p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 포함	4p	70p 71p	-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제율 확대 (4/104→6/106)	5p	154p	-
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혜택 조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최종 1주택 보유 기간만 기산	7p	23p	3p
	장기임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 양도 시에만 비과세 허용	7p	24p	4p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가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8p	21p 73p 216p	-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부동산취득권리 포함	8p	29p	-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임대주택 계산방법 보완	-	114p	-

부문	주요 내용	찾아보기		
		보도자료1 (요약본)	보도자료2 (상세본)	보도자료3 (문답)
혁신성장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등 16개 기술 추가	11p	80p	-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11p	58p	15p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 시 양도세 과세이연되는 재투자 기간을 6개월 연장	12p	103p	-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 비율 준수 시점을 9개월 이내로 완화	12p	100p	23p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연장	-	146p	-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범위 확대	22p	147p	29~30p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148p	-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 허용	-	149p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기간 연장(30일→60일)	-	198p	-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자 제출 대상자료 간소화 등 개선	-	192p	-
	약천후 등으로 골프행위 중단 시 개별소비세 환급	-	183p	-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확대	20p	184p	-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최고 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로 확대	20p	185p	-
규제 완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정	-	182p	40p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 포함	20p	186p	41p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 기준에서 유량계 제외	-	186p	42p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 허용	20p	187p	-
	환입 주류에 대한 환급(세액공제) 대상인 '생산 중단' 주류의 범위 규정	-	188p	-
공익법인 관리 강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실적에서 제외	19p	131p	27p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을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19p	133p	-

2018년 11월까지 국세수입 279.9조원

-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 발간 -

* 본 자료는 2019년 1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성과에서 발표한 「2018년 11월까지 국세수입 279.9조원 -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 발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수입) 11월 수입은 16.5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조원 증가, 누계(1~11월)는 27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0조원 증가*하였다.
- * 동 증가액은 전년 실적 대비 증가액으로,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
- (소득세) 11월 수입은 9.9조원이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조원 증가하였다.

- (법인세) 11월 수입은 1.4조원이며, 법인세 원천 분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조원 증가하였다.
- (부가가치세) 11월 수입은 0.7조원이며,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증가하였다.
- * 수입액(억달러): ('17.10~11월) 798.4 ('18.10~11월) 952.6 <+19.3%>

(단위: 조원, %, %p)

구분	'17년				'18년(잠정)				전년 동기 대비		
	추경 (A)	11월 (B)	1~11월 (누계, C)	진도율 (D=C/A)	추경 (E)	11월 (F)	1~11월 (누계, G)	진도율 (H=G/E)	11월 (F-B)	증감 (G-C)	진도율 (H-D)
◇ 국세수입	251.1	15.0	251.9	100.3	268.1	16.5	279.9	104.4	1.5	28.0	4.1
○ 일반회계	244.0	14.7	245.7	100.7	260.8	16.1	272.9	104.6	1.4	27.2	3.9
- 소득세	69.6	9.5	69.8	100.3	72.9	9.9	79.0	108.4	0.4	9.2	8.0
- 법인세	57.3	1.3	58.0	101.3	63.0	1.4	69.4	110.1	0.1	11.4	8.8
- 부가가치세	62.6	△0.2	65.6	104.9	67.3	0.7	68.7	102.1	0.9	3.1	△2.9
- 교통세	15.4	1.3	14.3	93.2	16.4	1.0	14.2	86.4	△0.3	△0.2	△6.7
- 관세	9.0	0.8	8.1	90.0	9.4	0.7	8.4	89.0	△0.0	0.3	△1.0
- 기타	30.2	2.0	29.8	98.7	31.7	2.4	33.2	104.7	0.3	3.4	6.0
○ 특별회계	7.1	0.3	6.3	87.9	7.3	0.3	7.0	95.9	0.1	0.8	8.1

■ (집행 실적) 11월 집행 실적은 260.6조원(연간계획 대비 93.0%)으로 11월 계획(257.9 ,92.0%) 대비 2.7조원(1.0%p) 초과 집행하였다.

(단위: 조원, %, 누적 기준)

구분	'18년			
	연간계획 (A)	11월 계획	11 실적(B)	집행률 (B/A)
◇ 집행현황	280.2	257.9	260.6	93.0

* 총지출 중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 등(33개 공공기관 포함)

■ (재정수지) 11월 통합재정수지는 8.8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3.3조원 흑자 제외)는 5.5조원 흑자이다.

• 누계(1~11월) 통합재정수지는 37.4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37.6조원 흑자 제외)는 0.2조원 적자*이다.

* 당초 '18년 계획 대비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단위: 조원)

구분	'17년		'18년(잠정)			전년 동기 대비
	추경 (A)	1~11월 (누계, B)	추경 (C)	11월 (당월)	1~11월 (누계, D)	증감 (D-B)
◇ 통합재정수지(a)	13.0	29.2	15.1	8.8	37.4	8.2
◇ 사회보장성기금(b)	41.9	37.9	46.5	3.3	37.6	△0.4
◇ 관리재정수지(a-b)	△28.9	△8.8	△31.4	5.5	△0.2	8.6

■ (국가채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3조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1.1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16년	'17년		'18년(잠정)				증감	
	결산 (A)	결산 (B)	전년 (B-A)	본예산	추경	10월(C)	11월(D)	전년 (D-B)	전월 (D-C)
○ 중앙정부 채무	591.9	627.4	35.4	675.1	667.4	666.2	667.3	39.9	1.1

※ 국고채 정기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 이루어짐

재정포럼

2019년 1월호 통권 제271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최준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 편집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권남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9년 1월 15일 발행 / 제23권 제1호(통권 제27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쉽게 얻은 정답은 진짜 나의 지식으로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식인이 되는 방법, 인터넷 검색(searching)이 아닌 독서(reading)입니다.